

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

50 Q&A about Unification



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

50 Q&A about Unification

CONTENTS. 차례

제1부 · 분단에서 통일로

제1장 통일정책

- 01. 통일은 왜 필요한가? 9
- 02. 통일한국의 비전과 미래상은? 12
- 03.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은 무엇인가? 14
- 04.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의 주요 내용은? 17
- 05.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과 지난 정부 대북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21
- 06. 한반도 평화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23
- 07.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평화비용의 개념은? 26
- 08. 통일문제를 둘러싼 소위 남남갈등의 배경과 해소방안은? 29
- 09.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접근방법인가? 32
- 10. 6자회담 등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34
- 11. 주변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36

제2장 남북관계

- 12. 남북대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39
- 13. 이산가족 교류 현황과 향후 대책은? 42
- 14. 국군포로·납북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44
- 15.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47

1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현황과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실태는?50

17.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54

18. 남북 경제협력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56

19. 「비핵·개방·3000 계획」의 개념과 추진계획은?58

20. 금강산관광 사업의 추진 현황과 정부의 입장은?61

21.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 현황과 정부의 입장은?63

22.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 추진 현황과 정부의 입장은?67

제2부 · 북한 속으로

제1장 북한의 정치·군사

23. 북한은 과연 변화하고 있는가?73

24.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있는가?76

25. 북한의 통일방안과 그 내용은?79

26.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란?83

27. 북한 권력기구의 특징은?86

28. 북한의 행정구역은?89

29. 북한의 재판절차는?	92
30.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95
31.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현황은?	98

제2장 북한의 경제

32. 북한 경제난의 원인과 그 해소 전망은?	101
33. 북한의 시장 실태는?	104
34. 북한의 식량 배급 체계는?	108
35. 북한의 식량(곡물) 수급 현황은?	111
36. 북한의 에너지 실태는?	114
37. 북한의 지하자원 분포 현황은?	117
38. 북한 화폐의 실제 가치는?	120
39. 북한에 사유재산 제도가 있으며, 상속이 가능한가?	123
40.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현황은?	126
41. 북한의 교통·통신 현황은?	129


제3장 북한의 사회·문화

42. 최근 북한 주민들의 의식·생활 변화 양상은?	133
43. 북한의 가족제도 및 관혼상제 풍습은?	136
44. 북한 주민들의 주거생활은 어떠한가?	139
45. 북한의 명절은 어떤 것이 있는가?	142
46. 북한 주민들의 여가 생활은 어떠한가?	145

47. 북한의 교육 실태는?	148
48. 북한 주민들의 남한 및 자본주의 문화 수용 실태는?	152
49. 북한의 종교 실태는?	155
50. 북한의 정보화 수준은?	158

부록

01. 남북 인적·물적 왕래 현황	163
02. 남북 교역 현황	165
03. 개성공단 사업 추진 현황	167
04.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168
05. 이산가족 교류 현황	169
06. 북한이탈주민 관련 현황	170
07. 북한 인구 현황	171
08. 북한 수교국 및 국제기구 가입 현황	172



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

제1부

분단에서 통일로

제1장 통일정책

제2장 남북관계

01

통일은 왜
필요한가?

■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자 반드시 이룩해야 할 민족적 과제이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희생은 하루속히 해소되어야 한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반목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둘째, 남북한의 주민들이 모두 자유와 민주주의, 복지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이다. 셋째, 남북한의 통일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의 국가와 민족이 존재해 왔다. 정치·경제·언어·문화 공동체를 이룬 우리 민족은 하나의 정치단위로 그 역량을 결집하여 문화와 생활을 발전시켰으며, 주변 국가와 친선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45년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토가 분단되면서 민족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남과 북은 동족 간의 참혹한 전쟁을 치렀고, 법적으로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 간에는 군사적 충돌이 간헐적으로 있어 왔다. 또한 우리 민족은 분단으로 인해 상호 격리된 채 대립과 갈등, 이산(離散)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비극과 고통의 근원이 제거되어 온 민족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로 존재하는 한, 상대편을 경계하고 유사시에 대비하는 데 상당한 역량을 소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비해 각기 인구와 경제 규모에서 약소국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남과 북은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소모적 대결에 사용하고 있는 국가에너지를 국민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또한 주변 국가와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함으로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전쟁 위협이 없는 한반도에서 민족이 힘을 모은다면 평화롭고 행복한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발전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 사이에 항구적 평화와 안정, 궁극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한반도는 외부 세력의 각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강대국 간 대결이 존속하는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은 동

북아 불안정의 근원적 요소 중 하나를 제거하고 동북아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둘로 갈라져서 살고 있지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02

통일한국의 비전과 미래상은?

■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는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동의가 있을 때 통일방식이나 통일에 대한 준비 등의 논의가 비로소 구체성을 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은 분단을 극복하는 민족사적 과업이지만,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통일은 한민족의 발전과 도약을 기약할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창조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민족공동체는 어떠한 비전과 지향을 가져야 할 것인가?

첫째,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바탕으로 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선진 민주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개인의 존엄성, 자유 등의 가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조건으로서 기회균등과 같은 가치를 진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들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고 확장하고자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한국 또한 개인적 자율성을 토대로 인간적 존엄성이 구현되는 자유민주

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념적 융통성과 포용성을 발휘하는 진전된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남북한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공동체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진전된 형태의 자유민주주의란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존하면서 경쟁하고, 다양성 속에서 통일을 추구하며, 다수결의 원칙 속에서 소수의 권리가 존중되는 민주주의를 뜻한다.

둘째, 통일한국은 경제적 번영을 이룩함과 동시에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분단으로 인해 남북이 소모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민족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에 온전히 투자할 수 있게 되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여 균형 잡힌 민족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통일한국의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회 내 재화와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제적 정의의 구축은 조화로운 공동체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셋째, 통일한국은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를 비롯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 수호라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분단으로 폐쇄되었던 삶의 공간을 대륙으로, 전 세계로 확장해 가며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열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도하며 세계평화와 번영에 창조적으로 기여하는 국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03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은
무엇인가?

■ 우리의 헌법은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시된 통일방안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89년 국민적 합의로 마련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일부 보완하여 발표한 것으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의해 계승되었다. 이명박 정부 또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 삼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두 가지 지주는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접근방법으로서의 민족공동체의 건설이다. 자유민주주의는 통일로 가는 과정이나 절차에서뿐만 아니라 통일국가에서도 일

관되게 추구되어야 할 가치로, 구성원의 권리와 자유 보장, 남북한의 다양성 존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족공동체의 건설은 남북한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을 이룩하여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 국가를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 나가는 3단계 통일과정을 상정하고 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에서 반목과 불신을 쌓아온 남과 북이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어 가자는 것이다.

첫째,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 간의 적대와 불신을 줄이기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남북은 분야별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각기 현존하는 두 체제와 정부를 인정하면서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둘째, 남북연합 단계는 화해협력 단계에서 구축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제도화되어 민족공동체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남북은 민주적 합의 절차에 의해 남북연합 현장을 채택하고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한다. 즉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 하에서 통일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체제 통합 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 단계에서 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동족상잔의 전쟁과 장기간의 분단이라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한 점진적·단계적 통일방안으로, 화해협력을 통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통일의 중간 단계인 남북연합을 거쳐 궁극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합리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04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의 주요 내용은?

■ 남북관계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이래 2000년과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대화와 교류협력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은 양적인 성장에 미치지 못하였고, 우리의 지원과 협력에 상응하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도 못하였다. 북핵 문제는 여전히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남아 있다.

한편 북한은 군사적 대치의 상대방이자 협력의 동반자라는 양면성을 띤 존재이며,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남북관계는 이와 같은 북한의 이중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보편적 국제기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풀어나가야 한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올바르게

게 인식한 바탕 위에서 북핵 폐기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남북 주민 모두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상생과 공영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가 실현되는 「평화공동체」,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의 토대 위에서 호혜적 경제협력관계가 형성되는 「경제공동체」,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남북한 7천만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공동체」라는 3대 비전을 추구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네 가지 원칙으로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 합의,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를 제시하고 있다. 실용과 생산성의 원칙은 남북관계를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나감으로써, 대북정책이 더 이상 소모적이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용과 생산성의 구체적 기준은 국민 동의, 비용 대비 성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북한의 발전 촉진 여부, 평화통일로의 기여 등이다.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은 북핵 폐기 및 진정성 있고 내실 있는 대화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되, 접근방식은 현실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민 합의의 원칙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는 한반도 문제가 남북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남북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를 실현할 것이다. 이제 남과 북은 가슴을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할 때이다. 이 같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들을 풀어 갈 것이다. 또한 남북 간 합의 정신에 따라 상호 존중과 비방 금지 등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회담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남북대화를 통해 정치적 신뢰를 쌓아가고자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을 실현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6자회담 및 남북회담 등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이루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여 남북 간 긴장완화를 제도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평화구조를 형성하여 현재의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켜 나갈 것이다.

셋째,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산림분야, 농수산, 자원개발 협력과 개성공단, 대북 투자사업 등을 통해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는 상호 보완적인 경협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다. 새로운 경협사업은 북핵 문제의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 합의의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민간 경제협력사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비핵·개방·3000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 북한의 핵 폐기 과정에 상응하여 북한의 경제 발전과 국제사회 참여를 지원하고자 한다.

넷째, 사회·문화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역사, 문화, 학술, 종교,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와 접촉을 통해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시켜 나갈 것이다. 남북 간 민간교류가 다양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며, 사회·문화교류의 제도화를 위한 당국 간 협의체 구성 등 남북 교류협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다섯째,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고령 이산가족의 자유 왕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남북대화의 협상 의제로 제기하여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동포애와 인도적 견지에서 조건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인도주의적 지원의 취지에 맞도록 분배 투명성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05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과 지난 정부 대북 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 역대 정부는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관계 발전, 나아가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목표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점에서 과거 역대 정부들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즉,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북핵 폐기라는 확고한 원칙 하에 절차와 방식을 실용주의에 맞게 추진해 간다는 점에서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 핵문제는 우리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적 비확산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남북관계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촉

진 ·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확대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적 현안에서의 협력은 미흡했으며, 국군포로 · 납북자 문제 등에서도 주목할 만한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지난 정부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은 대체로 쌍방향적 협력보다는 지원성 협력의 성격을 띠었고, 우리의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하고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협력을 지향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과거에 이루어진 남북 합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실용주의적인 맥락에서 접근해 나갈 것이다. 과거 남북 간에는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6.15 남북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 이제는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하며, 남북 간에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06

한반도 평화정착의 바람직한 방향은?

■ 한국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미 남북은 1991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정전상태의 공고한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1997년부터 개최된 4자회담(남·북·미·중 참여)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가시적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시작된 6자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2005.9) 및 「2.13 합의」(2007.2)를 통해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고 합의하는 등 북핵 문제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도 논의하도록 하였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남북은 한반도 평화체제 및 종전선언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다.

이제는 20세기의 의제였던 ‘냉전구조의 해체’ 논리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21세기 전략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과 ‘통일의 비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인위적인 접근이 아닌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다른 분야의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이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정착될 수 없으며, 평화 없는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의 입장에서조차 핵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경제를 재건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남북회담 등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촉구하여 북한의 조속한 핵 폐기 이행을 유도하고,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따라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가 함께 발전되도록 할 것이다. 이로써 남북관계가 6자회담 진전을 지원하고, 또 6자회담의 진전이 남북관계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자주 국방력 강화, 한미동맹 강화, 주변국과의 협

력 증진 등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이를 기초로 남북 간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에 걸친 포괄적 긴장완화와 상호 신뢰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까지는 기존의 정전협정을 확고히 유지할 것이다. 또한 남북 간 긴장완화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토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평화구조를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 새로운 평화구조란 남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생산성 있는 교류협력 관계를 통해 만들어 가는 상생과 공영의 한반도 질서를 의미한다.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협력을 토대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종식시켜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현재의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켜 나갈 것이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 한반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모색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 및 각국의 한반도 전략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변국과의 선린관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07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평화비용의 개념은?

■ 분단비용은 분단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곧 남북한 사이의 대결과 갈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무형의 지출성 비용을 말한다. 유형의 분단비용에는 군사비, 이념·체제 유지비, 외교·행정비 등 분단 관리를 위해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 등이 해당된다. 무형의 분단비용은 분단으로 인해 사회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자, 통일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소멸되는 소모적 비용이다.

그리고 통일비용은 통일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다. 다시 말해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남북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데 소요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비용을 의미한다. 통일비용은 통일방식과 통합과정의 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기관리비용, 경제재건비용, 제도통합비용, 사회보장비용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일비용은 소모적 성격의 분단비용과는 달리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비용으로, 통일에 따른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투자 성격을 지닌다. 통일에 따른 편익에는 경제적 편익과 비경제적 편익이 있다. 경제적 편익으로는 분단비용 소멸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르는 편익이 있다. 비경제적 편익은 분단 해소로 인한 안보 불안 및 전쟁위기 해소의 정치·군사적 편익, 이산가족 문제 해결, 북한 주민의 인권·자유 신장 등의 인도적 편익, 학문·문화적 발전과 관광·여가·문화서비스 기회 향상 등 사회·문화적 편익이 있다.

한편 평화비용이란 한마디로 평화를 지키고 창출하기 위한 비용이다. 평화비용은 통일 이전에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우선 정치·군사적 비용을 생각할 수 있다. 즉, 한반도 전쟁 위기를 억지하고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출하는 모든 형태의 비용이 포함된다. 더 나아가 평화비용에는 남북 경제협력과 대북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비용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남북 간 신뢰를 제고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대감을 완화하는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평화비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급성과 당위성이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며, 여기에는 당연히 상당한 비용 지출이 수반될 것이다. 둘째, 편익성이다. 평화비용은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는 사전적(事前的) 비용이자 수익적 성격을 띤다.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비용은 소모성 비용이라기 보다는 통일을 위한 선(先)투자비용의 성격이 짙다. 특히, 북한의 사회간접시설과 관련된 비용 지출은 통일에 따라 소요될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전 북한의 경제발전 도모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지출이 남한에서 생산한 물자의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남한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우리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에 따른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비용은 분단비용을 줄이면서 훗날 통일비용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08

통일문제를 둘러싼 소위 남남갈등의 배경과 해소방안은?

■ 통일문제와 관련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 이른바 남남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쟁과 60여 년간의 분단 상황에서 형성된 우리 사회의 분열에서 찾을 수 있다. 남남갈등은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는 이념적·정치적·지역적 분열상에 근원적 영향을 받으면서, 여기에 더하여 북한의 본질과 변화에 대한 해석의 문제, 대북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의 실효성 문제, 통일·대북정책의 국내 정치적 이용 문제, 대북정책의 투명성 및 국민적 합의 문제 등이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둘러싼 갈등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견이 제시될 수 있고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성적 토론의 수준을 넘어서 감정적 대립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 내부 갈등의 해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대북정책은 국민적 지지 위에 추진되어야 할 정책 영역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안정화되고 실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대북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내부의 갈등 해소는 남북한 주민 간의 신뢰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남북통합과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키는 유인이 될 것이고, 남북한의 실질적인 접근을 촉진해 나가는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통일·대북정책이 어떤 특정한 정파가 독점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며, 초당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정착이 21세기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깊은 인식 하에 분파적인 손익계산을 넘어서 탈냉전적인 사고와 비전을 가지고 남북 문제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들에게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하는 등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경제의 발전과 지역갈등, 빈부갈등, 세대갈등 등 우리 사회의 제반 갈등구조의 해결 또한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인 및 집단 차원에서 상호 이질감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소득불평등 구조의 개선을 통해 계층 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적 통합과 대화합을 도출하려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09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접근방법인가?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남북 간의 문제이자 국제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북핵 문제의 성격을 반영하여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당사자로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인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다.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이 대두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는 등 북핵 위기 상황이 고조되자, 이 문제를 협의해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6자회담이 시작되었다.

이후 지속된 6자회담은 2005년 9월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9.19 공동성명」이라는 결실을 맺었고,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여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참여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7년 2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 합의), 2007년 10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 등 합의를 이루었다.

이들 합의를 기반으로 북한 핵시설 폐쇄·봉인 및 핵 신고서가 제출되었고, 핵시설 불능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신고서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 등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북·미를 중심으로 관계국 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2008년 12월에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와 관련한 합의를 시도하였다.

동 수석대표회의에서 시료 채취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검증의정서가 합의되지는 못했으나, 이것이 지금까지의 북핵 불능화 과정이 성과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과정과 그에 앞선 핵시설 신고 등을 볼 때 6자회담이 북핵 문제의 진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6자회담 참가국 모두의 공통된 입장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국과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6자회담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관련국과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을 담는 중요한 대화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6자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 북미대화 등 핵심 당사국 간 양자대화가 6자회담과 상호 선순환적으로 진전되는 것이 중요하다.

●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 (2008.12.8, 북경) ●



10

6자회담 등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남북대화와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각국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6자회담 내 한국의 위상이 강화되어 왔고, 과거 제네바 합의 과정과는 달리 북핵 문제 핵심 당사자로서의 입지가 확립되었다.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9.19 공동성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2.13 합의」 및 「10.4 합의」 도출 과정에서 각국과의 협상을 통해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였다. 이 결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핵시설 폐쇄, 핵 프로그램 신고, 핵시설 불능화’라는 로드맵이 만들어졌다.

한국은 비핵화 조치의 순조로운 진전을 위해 「2.13 합의」에 따라 설치된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Working Group)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BDA(Banco Delta Asia) 북한

자금 동결 문제로 비핵화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중유 5만 톤을 선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핵시설 폐쇄·봉인을 이끌어 냈다.

또한, 북한의 불능화 중단 조치(2008.8)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에너지 설비·자재 제공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2008.9) 등을 통해 북한에 직접적으로 불능화 재개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북한의 불능화 작업 및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요원들의 감시활동이 재개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는 6자회담 과정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처하였을 때 이를 타개하고 중재하는 등 합의 도출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 양자 차원은 물론 미·일·중·러 등 6자회담 참여국 간 타협과 조정을 통해 북핵 불능화 조치의 이행과 함께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11

주변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 최근 동북아 지역의 정세는 갈등과 대립의 역사적 유산, 냉전의 잔존 등으로 역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도 대립이나 갈등보다는 전반적으로 협력적·안정적인 분위기가 유지되었다.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의 역내 구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부상과 러시아의 영향력 복원을 위한 노력이 동북아 정세의 큰 흐름이 되고 있으며, 북핵 문제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논의 가능성도 주요한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주변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도 이와 같은 동북아 지역의 정세 변화와 자국의 이익이 투영되어 나타나게 된다.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전통적 양자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잠재적 견제 세력인 중국·러시아와도 양자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동북아 역내 다자협력을 확장하는 데 노력해 왔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역내에 강력한 국가가 출현해 지역 패권을 장악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저하시키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미국의 대(對)한반도 전략도 이와 같은 미국의 세계 전략과 동북아 전략의 틀 안에서 전개되고 있다. 즉,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을 억제하여 안정을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한반도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동시에 세계 전략 차원에서 지역 패권국가 등장 저지 전략과 반(反)테러전략을 한반도 정책에 투영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동맹 및 미·일 동맹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을 관리하면서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핵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의 성공적 해결을 통하여 6자회담을 동북아 지역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다자안보협력의 틀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으로서 미국의 세계 전략 및 동북아 전략에 호응하여 전략적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즉, 미·일 연합군 유사체제를 지향한 주일미군 재편, 일·호(濠) 안보공동선언, 미·일·호 3각 안보연대 등 미·일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자국과 아시아·태평양의 안정을 위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자국의 큰 관심사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북 강경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입장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전략, 한국의 대일 인식과 정책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은 고도 경제성장으로 국력이 신장되면서 탈냉전기 동북아 국제 질서 재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대규모 공동 군사훈련 실시, 상하이 협력기구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서 주변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에 협력하지만, 미국 주도 아래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것은 견제하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도 이와 같은 동북아 전략의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남한과는 호혜협력, 북한과는 우호협력을 통해 남북 균형의 교류를 도모하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자국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강대국들의 영향력 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남북 당사자 간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전략적 입장을 견지한다.

러시아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실리 중심의 대외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미·일 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역할 확대를 견제하고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한국·일본과의 경제협력 및 개발투자 유치를 중시하며 역내 국가들과의 교류를 추구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대북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또한 북핵 문제의 중재자로서 대북 영향력을 복원하는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한국과의 경제 교류를 통한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12

남북대화
대한 정부의
입장은?

■ 남북 대화는 1963년 동경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이 개최되면서 시작되었고, 1972년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남북조절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인도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의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남북회담이 경제 분야로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1970~1980년대의 남북 대화는 냉전체제 하에서의 대결구도라는 근본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없었다.

냉전의 해체라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1990년대 남북관계는 짧은 해빙기를 맞이하였다. 남북은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남북한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내용을 협의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2000년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남북 당국 간 회담 분야가 다양하게 확대되는 등 남북 대화에 있어서도 외형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남과 북이 가슴을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때이다. 곧, 남북대화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모든 현안들을 북한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로 풀어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다.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이 제기하는 문제도 망라하여 대화를 통해 이행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진정성 있는 대화란 남과 북이 현실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화해와 평화, 상생과 공영을 이루어내기 위한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대남전략이나 대북전략과 같은 차원에서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이 서로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남북은 상호 존중과 비방 금지 등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회담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진정한 대화를 할 수는 없다. 이미 남북은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합의하였고, 또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거나 상대방의 특징인을 지명하여 공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남북 간의 합의 정신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쌓아갈 것이다.

정부는 2008년 4월 남북 상설대화기구 설치를 북한 측에 제안한 바 있으며, 대통령 취임사, 국회 개원연설, 8.15 경축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 간 대화를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비난을 지속하며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였다. 2008년 10월 북한의 제의로 남북 군사 실무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남북 간 대화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을 제기한 채 종료되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대화 재개 노력에 호응하여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한 간의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13

이산가족 교류 현황과 향후 대책은?

■ 1985년 9월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방문 실현으로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 말부터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상봉 등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가 시작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남북 당국 간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 교류가 추진되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6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실시되었고, 2005년부터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화상상봉을 7차례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총 3,935가족 19,960명이 상봉하였다.

정부는 당국 차원의 교류와 병행하여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상봉 등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이산가족들의 북한주민 접촉승인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였고, 1998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산가족들의 교류 소요경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산가족 1세대의 생전 모습

을 영상으로 남겨 향후 북한 유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분단의 역사적·교육적 기록으로도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2005년에 4,000여 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산가족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에는 10만여 명의 이산가족들이 재북 가족사항 등을 등록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방북단 후보자는 여기에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2008년 11월 말 현재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총 127,323명이며 이 중 생존자는 89,074명이다.

한편,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보다 확대하고 정례화하기 위해 북한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여 왔다. 남북한은 2002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에 합의한 이후 여러 차례의 실무접촉을 거쳐 2003년 제5차 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운영에 합의하였고, 2005년 8월 착공하여 2008년 7월 완공하였다.

정부는 매년 3~4천 명의 이산가족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의 자유왕래를 우선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횟수를 늘려 생사확인 및 상봉을 확대하고, 금강산면회소 개소를 계기로 이산가족이 상시적으로 상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나아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사·주소 확인과 상봉의 전면적 실시,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14

국군포로 · 납북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과 귀환 국군포로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를 563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811명이고, 2000년 이후 탈북하여 귀환한 7명을 포함하여 3,317명(87%)이 귀환하였으며, 2008년 11월 말 현재 총 494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국군포로 문제는 ‘국가를 위해 희생된 유공자’라는 인식 아래 이 문제의 해결을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설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관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남북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개척하는 노력과 함께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우리 정부는 두 가지 차원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입법을 통하여 국군포로와 납북자 당사자, 그 가족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군포로가 국내에 귀환한 경우, 북한의 포로가 된 날부터 대한민국에 귀환하여 전역한 날까지의 보수, 연금 및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납북자와 관련해서는 귀환 납북자 재정착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납북자가 귀환하는 경우 국내 재정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납북자 가족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 시행 이후 2008년 11월 말 현재까지 정부는 총 172건을 심의하여 56억 1천만 원의 가족피해위로금과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둘째,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생사·주소 확인→서신 교환→송환’ 등 단계적이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되, 그 이전까지는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켜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시 일정한 비율로 참여시킴으로써 생사확인과 상봉을 지속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상봉이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16차례 실시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국군포로 101명에 대한 생사확인을 의뢰하여 13명 생존 확인, 12명 사망확인, 76명 확인불가로 통보받았고 생존자 13명 중 11

명이 납북 가족과 상봉하였으며 상봉에는 국군포로 20가족, 78명이 동반 참여하였다. 또한 전후 납북억류자 97명에 대한 생사확인을 요청한 결과 15명 생존, 19명 사망, 63명 확인불가로 통보받았고 생존자 15명 중 14명이 납북 가족과 상봉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북한에 배우자와 자녀들을 두고 있어 상봉행사에 16가족 73명이 동반 참여하였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 다양한 회담 채널을 통하여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2002.9)에서 “지난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었다.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2006.2)에서는 “전쟁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문제도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적십자회담에서의 이러한 합의과정을 촉진하고 합의사항의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가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남북대화 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북한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다.

15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게 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과정과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이다.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굶주림에 지친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하여 북한을 탈출하게 되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북한 체제의 폐쇄적 속성으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국내외 인권단체 및 국제기구 등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며 어느 국가에게나 중요한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 오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 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추구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도모한다는 입장에 따라 인권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대신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통한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호 등 인권 환경 개선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자제하고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에 일관성 없이 대응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내외의 비판을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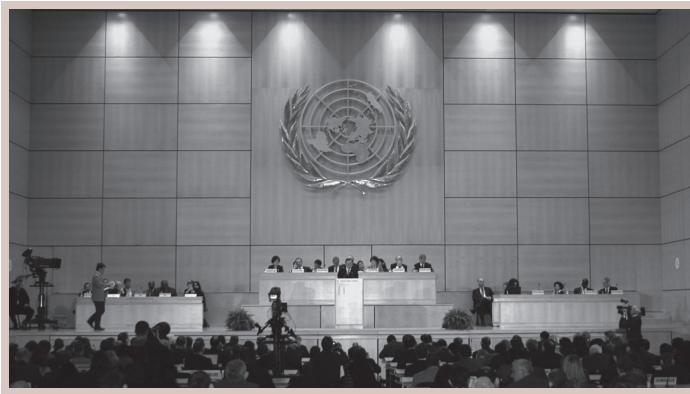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전략적 차원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 구현 차원에서 접근할 것임을 천명하고 UN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7차 UN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2008년 8월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협의하고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08년 11월 일본과 유럽 연합이 주도한 대북한 인권결의안 상정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고, 2008년 12월 UN총회에 상정되어 채택된 동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더불어 정부는 북한 인권 관련 NGO와의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NGO는 북한 인권 상황의 ‘감시와 비판자’로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 활동과 국제 캠페인 활동 참여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 과정에서 NGO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개발사업이나 결핵관리·의료인력 교육 등의 보건의료 사업,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사업 등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점진적·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제7차 UN 인권이사회 (2008.3, 제네바) ●



1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현황과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실태는?

■ 2008년 11월 말 현재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만 4천 명을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입국할 때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정착지원을 실시해 왔고,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적응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보완해 왔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

구 분	세 부 내 용
정착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착기본금 + 주거지원금 : 세대구성에 따라 책정 정착가산금 :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아동 등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위한 지원금

구 분	세 부 내 용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및 제3국 체류 시 획득한 학력 및 자격 인정 • 학비면제(중·고등학교 및 국·공립대) 및 보조(사립대 학비 1/2, 대학입학특례(재외국민특별전형))
사회보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계급여 : 초기 6개월 조건 면제 • 의료보호 : 의료보호 1종 혜택 • 국민연금 특례 : 60세 전 5~10년 동안 가입자는 60세 이후부터 연금 지원
정착도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편입 초기 지역정보 제공, 생활안내 및 상담, 복지관과의 연계 등 초기 정착생활을 돕는 역할 수행(1년간)

정부는 2005년에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시스템을 보호 중심에서 자립·자활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 데 이어, 2007년에 다시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착기본금을 1인 세대 기준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축소하고, 주거지원금은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취업장려금을 기존 최대 9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장기 취업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근로능력세대(세대 구성원 중 근로능력자가 있는 세대)와 근로무능력세대로 분리하여 근로능력세대의 경우 생계급여의 특례기간을 축소,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개인별 적성과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고용지원센터에서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을 6개월 이상

이수하면 정부로부터 직업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월 2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기간에 따라 산정해 주고 있으며, 직업훈련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자격취득장려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 제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최대 70만원)에 해당하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이·퇴직 없이 동일한 업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취업한 경우 총 1,5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3회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보호담당관(거주지 보호, 취업보호, 신변보호) 제도를 두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인 정착도우미들을 통해 초기 정착을 돕고 있다.

이와 같은 정착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 남북한 직장 문화 및 노동 강도의 차이, 국내 노동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정규직의 감소, 여성 입국자의 증가에 따른 육아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정착지원 측면에서 2008

년 「새터민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을 위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기업체, NGO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맞춤형 취업연계 직업훈련 및 OJT(On-the-Job Training)을 실시하고,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모형을 시범적으로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각종 법·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등 국내 정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남북 경제협력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탈북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시키려는 노력 또한 병행할 것이다.

17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정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과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애를 구현한다는 당위적 측면, 남북 화해협력의 실현이라는 실용적 측면에서 대북지원을 실시해 왔다.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에 빠졌던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북지원은 식량난 및 재해 구호 등의 긴급 구호와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보건·의료환경 개선,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효과와 함께 남북 화해협력과 북한의 대남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대북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우선 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었다. 정부는 대북협의 등을 통해 지원 물품의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원 물품의 전용 우려 등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 문제나 일부 단체의 남북협력기금의 부적절한 사용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동포애와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추진할 것이다.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하여 지원할 것이며, 북한에 심각한 식량위기나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민간 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병행해 나갈 것이며, 인도주의적 지원과 함께 개발지원도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또한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제기된 미흡한 점들을 보완함으로써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2008년도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40개 개별사업에 102억 원, 농촌시범마을 조성 등 2개 합동사업에 18억 원, 보건·의료, 산림녹화 등 4개 정책사업에 44억 원 등 총 164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119만 달러, WHO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1,027만 달러,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407만 달러, 국제백신연구소의 북한 백신지원사업에 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18

남북 경제협력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지난 20년간 추진되어 온 남북 경제협력은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다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지원성 협력 위주로 진행되어 지속가능한 경협모델을 구축하지 못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제 남북 경제협력은 그간의 지원성 협력의 성격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도약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접어들었다. 즉, 남북한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의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 간 생산요소의 비교 우위 등을 감안하여 우리 측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노동력 및 지하자원과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상호 보완적이고 생산적인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 사업과 위탁가공 사업이 그 좋은 예이며, 남북 당국 간 추진하였던 경공업 원자재-지하자원 개발 협력 사업 등도 상생의 경제협력의 주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북핵 문제의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라는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사업을 검토·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민간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 사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상사분쟁 해결 수단 부재 등 경협사업의 제도적 장치 부재로 인한 거래비용을 줄여 나가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경협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데 현실은 아직 이러한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 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하여 3통 문제 해결,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경협이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비핵·개방·3000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개혁·개방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북핵 폐기 진전에 따라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5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10년 내 북한을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의 경제로 도약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본격 추진될 경우 북한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9

「비핵 · 개방 · 3000 계획」의 개념과 추진계획은?

■ 「비핵 · 개방 · 3000 계획」은 북핵 상황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제 · 교육 · 재정 · 인프라 · 생활향상 등 5대 분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10년 내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대북전략이다. 「비핵 · 개방 · 3000 계획」은 북한에게 핵 포기 시 얻게 될 분명한 혜택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판단과 결심을 유도하는 유연하고도 적극적인 방안이자,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계획의 이행 과정에서 남북 경제가 상호 보완적인 구조로 발전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비핵」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 ‘상태’가 아닌 핵 시설 신고 · 불능화부

터 핵 폐기 완료까지 북핵 문제 해결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핵·개방·3000 계획」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북핵 폐기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개방」은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등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세계 경제체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3000」은 중산층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북한이 적어도 이러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통일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평화통일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비핵·개방·3000 계획」은 단계별로 추진될 것이다. 1단계에서는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에 따라 동 계획의 가동 준비에 착수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비핵·개방·3000 계획」이행에 대해 북한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다.

2단계는 북핵 폐기의 이행 단계로, 여기서는 5대 분야 중에서 우선 이행 가능한 분야의 일부 프로젝트를 가동함으로써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3단계는 북한의 핵 폐기 완료 이후로,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의 5대 분야를 본격 가동하여 남북 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의 「비핵·개방·3000 계획」에 대해 지지 의사

를 밝히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은 우리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제 사회의 일치된 요구이며, 6자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원칙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2008년 4월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에서 「비핵·개방·3000 계획」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확보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핵시설 불능화의 진전에 따라 이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다.

20

금강산 관광 사업의 추진 현황과 정부의 입장은?

■ 금강산 관광은 1998년 4월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의해 기업인의 방북이 허용됨에 따라, 그해 6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관광 및 개발 사업에 합의하고 11월 18일에 금강호가 동해항을 첫 출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03년 9월부터는 육로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해로 관광은 중단되었다. 금강산 관광은 서해교전 등 남북관계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성장하여 2004년 정상 궤도에 올라섰고, 이후 지속적으로 관광객 숫자가 증가하였다.

2007년 6월부터 내금강 관광이 개시되었고, 2007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는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의 호전에 힘입어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 6월에 들어서 1998년 금강산 관광 시작 이후 누적 관광객이 150만 명을 돌파했고, 10월 한 달 동안의 관광객이 1998년 이후 최고치인 6만 3천여 명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2007년 한 해 동안 34만 5천 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방문하였다.

2008년 3월부터는 1일 20대 규모의 금강산 승용차 관광이 실시되어 금강산 관광객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7년 6월부터 2박 3일 일정의 내금강 관광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외금강 지역에 한정되었던 관광코스가 내금강까지 다양화되었다.

이외에도 금강산에는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확충되었다. 2006년도 외금강 호텔 및 농협 금강산 지점 개장에 이어, 2007년 5월에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금강산 면세점이 개장되었고 11월에는 가스충전소가 들어섰으며 2008년 5월에는 골프장도 개장되었다. 한편 조계종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불교 사찰인 신계사 복원공사를 4년여 만에 마무리하고 2007년 10월 낙성식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북한 측 초병의 총격에 의해 우리 측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잠정 중단되었다. 이번 사건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고 저항 의사도 없는 여성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비인도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남북 간 합의서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우리 측 관광객의 신변안전에 대한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 현황과 정부의 입장은?

■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남한의 현대와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2003년 6월 개성공업지구 착공식을 거행하였고, 2004년 4월에는 남북이 1단계 330만㎡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4년 4월 개성공단 투자환경의 사전 검증을 위하여 1단계 330만㎡ 부지조성 공사 및 시범단지 개발에 착수하였다. 2004년 10월 20일에는 개성공단 관리기관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개소식을 갖고 현지 공단 관리 업무를 시작하였다.

한편 북한은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한 데 이어, 2003년에 「개성공업지구개발규정」 등 7개의 법규를 제정하였고, 2004년 「외화관리규정」을 비롯한 4개 규정을 제정하는 등 총 16개의 하위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한은 2002년 12월 「개성공단 통관·통신·검역 합의서」를 채택한 데 이어 2003년 8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개 경협합의서를 발효시켰다. 아울러 2004년 1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2004년 12월 시범단지 첫 제품 생산 등 시범단지 입주기업들의 건축·가동이 본격화되고 국내 입주 희망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본단지 분양이 추진되었다. 2005년 8월 1차로 16만 9천㎡의 용지에 총 23개 업체와 1개 기관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007년 4월말 실시된 1단계 2차 분양은 2.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개성공단 기반시설 공사도 2007년 10월까지 모두 완료되어 2007년 10월 16일에 1단계 기반시설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1단계 부지조성 공사는 2006년 6월 완료되었으며 용수시설,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내부기반시설도 2007년 10월 모두 완공되었다.

전력은 10만KW 용량의 송변전시설인 「평화변전소」 공사를 추진하여 2007년 5월부터 입주기업들에게 송전방식의 전력 공급을 시작하였다. 통신은 2005년 12월 303회선 개통을 시작으로 2008년 7월말 현재 700회선의 전화·FAX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08년 12월 15일 현재 개성공단에는 총 91개의 기업이 가동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첫 제품 생산 이후 2008년 10월 말까지 누적 생산액은 4억 8천 3백만 달러에 달하고 수출액은 약 9.2천만 달러로 생산액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의 연도별 생산액은 2005년 1,490만 달러, 2006년 7,373만 달러, 2007년 1억 8,477만 달러로 2006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개성공업지구 전경 ●



개성공단 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하여 남북이 모두 이익을 얻고자 추진된 대표적인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사업이다. 특히 국내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따라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은 화해와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경의선 도로를 통해 매일 1천 명의 인원과 600대가 넘는 차량이 서울과 개성을 오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통근버스 100대를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탁아소 건설에 착수하였고, 소각장 건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08년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통행을 제한하고 개성공단 내 상주체류인원을 제한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장애를 조성하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북한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각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남북의 당국자들이 만나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성공단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전력, 용수, 통신 등 기반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통행에 대해서도 원자재 공급, 생산제품 납품차량에 대해 우선권을 주는 등 편의를 보장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2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추진 현황과 정부의 입장은?

■ 분단 이후 남북한에서는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언어, 문화, 예술, 종교, 생활문화 등 사회 전 부문의 이질화가 진행되어 왔다. 사회·문화교류협력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의 물꼬를 튼 것은 체육교류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 청소년축구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한 이래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한 선수단이 최초로 공동 입장하였고, 이후 각종 국제대회에서 남북 공동 입장을 실시하였다. 축구 친선경기, 태권도교류 등도 이루어졌고, 2008년 3월 제주도에서 열린 아시아 주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학술분야에서는 역사학을 중심으로 남북교류가 활기를 띠고 있다. 2004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일제 약탈문화재 반환 공동학술토론회를 계기로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구성되어 고구려 유물전, 고구려 고분군 실태조사,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등도 북한과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남북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 이후 언어생활 통합을 대비한 공동 사전을 편찬하고 있기도 하다.

남북은 민족 정기를 되살리기 위한 사업에도 협력하고 있다. 남북은 공동으로 노력하여 일본에 약탈당한 북관대첩비를 반환받아 2006년 원소재지인 함경북도 길주군에 복원한 바 있다. 또한 중국 여순 감옥에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및 봉환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남북교류가 진행되어 왔다. 분단 후 처음으로 2000년 8월 KBS 교향악단과 조선국립교향악단이 합동음악회를 열었고, 이후 다양한 남북 합동공연 및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2006년에는 윤이상음악회가 남북 합동으로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방송 분야에서는 2002년 KBS 교향악단의 평양공연 및 MBC 평양 특별공연, 2005년 SBS의 조용필 평양 콘서트 등 많은 행사가 진행되었고, 역사와 자연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등 방송 프로그램이 북한 현지에서 촬영되어 국내에 방영되기도 하였다. 2007년 KBS는 사극 「사육신」을 북한에 주문제작하여 국내에 방영하였다.

종교 분야에서는 각 종단별로 꾸준한 교류협력을 진행하여 왔다. 평양 봉수교회, 금강산 신계사 등 북한 지역의 예배당과 사찰의 복원을 지원하고, 남북공동기도회와 법회를 개최하는 등 인적왕래도 추진하고 있다. 종교계는 식량·의료 등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남북의 다양한 교류와 접촉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쌓아가는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 학술, 종교,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과 교류를 높여 민족공동체 의식을 일깨워 나가고자 한다. 남북 간 민간교류가 다양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교류 방식에 있어서도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하도록 힘쓸 것이다. 또한 진행되고 있는 교류를 정례화하고 제도화해 나가는 한편, 남북 당국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교류의 통로를 열어 주고 안내함으로써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가도록 할 것이다.

●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현장 ●





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

제2부

북한 속으로

제1장 북한의 정치 · 군사

제2장 북한의 경제

제3장 북한의 사회 · 문화

23

북한은 과연
변화하고
있는가?

■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변화의 개념과 영역, 정도에 대한 이해와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북한의 변화를 긍정하는 쪽은 작은 시내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현재 북한은 미흡하나마 많은 부분에서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의미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의 변화를 부정하는 쪽은 사소한 부분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가 중요한데 북한은 아직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국제적 고립, 김일성 사망, 자연재해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신사고’를 강조하고, 2002년에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7.1 조치)를 시행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북한의 변화 가운데 하나는 세대교체 현상이다.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추진되면서 비교적 젊고 전문성을 갖춘 간부들이 중용되고 있다. 노동당 인사로는 이광호 당 과학교육부장, 내각 인사로는 김승현 금속공업상, 김명길 UN주재 북한대표부 공사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경제부문에서는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7.1 조치를 단행해 실적급제를 실시하고 노임과 가격을 현실화하였으며 배급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다. 또한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줄여나가고 소유제도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기업과 기관 등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고 가두매대 등의 설치를 늘리고 있다. 특히, 2003년에 시장을 공식화하고 개인 상업을 허용하는 조치를 실시하였고, 2004년에는 협동농장에 포전담당제*를 시범 도입하고 생산기여도에 따른 차등 보상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하여 금강산관광특구(2002.10), 개성공단특구(2002.11) 지정에 이어 「북남경제협력법」(2005.7)을 제정하였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상업은행법」(2006.1), 「대외결제는행돈자리규정」(2006.11) 등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선진 시장경제제도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경제 관료들의 해외시찰과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과 사회의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현물배급제로부터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형태로 바뀜에 따라 개개인의 시장 마인드가 확산되었고, 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부(富)

* 협동농장에서 경작을 담당하는 기본단위인 분조를 가족·친척을 단위로 2~5명으로 구성, 집단농에서 개인농으로 전환해 나가는 과도적 형태의 영농방식.

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이처럼 물질 우선의 사고가 확산되면서 사상이나 이념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우리 측의 대북지원,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등으로 남북 주민들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대남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외부 문화가 점차 유입되고 있는 점이다. 외부 문화 유입은 중국을 오가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7.1 조치 이후 장사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이동성이 늘어난 데다, 종합시장의 설치로 상품 거래와 외부 정보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데에서 기인하였다. 특히 TV, 녹음기, 외국 영화와 비디오 등의 거래는 외부 정보와 문화를 접촉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 당국은 정보와 물자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시장에 대해 통제를 가하고,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중시하는 등 체제 이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08년 12월 1일부터 남북 경제협력의 현장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우리측 인원의 통행을 제한하고 체류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 볼 때 북한의 변화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4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있는가?

■ 북한에서는 식량과 에너지 부족 등 지속되는 경제난과 「7.1 경제관리개선조치」(7.1 조치)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 현상, 주민들의 의식 변화 등으로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일부 불안한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보도되면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는 여전히 김정일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통제 체제도 유지되고 있어, 급작스럽게 붕괴에 직면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외부 정보 유입의 차단, 체제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사상교육 강화, 사회적 이탈현상을 물리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 통제기구의 존재, 최악의 경제난에서의 탈피 등으로 체제 내부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엄격하게 차단하여 체제 비교를 통한 주민들의 불만 표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의 원인을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 등 내부적 요인보다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등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고 있다. 북한은 “제국주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경계하여 “사회생활 모든 분야에서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한다”고 강조해 오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모기장론’^{*}을 내세워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제국주의’와 외부 사상의 위험성을 강조함으로써 주민을 외부세계와 격리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내부결속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해 왔다. 이것은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북한 당국이 ‘제국주의’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이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단은 어느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발달되어 있다. 각급 당조직은 북한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과 같은 체제안보 기구들도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이탈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등 강력한 사회 통제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는 1990년대 중후반에

* ‘모기장론’은 부분적 체제개방에 따라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들어올지라도 사상교양사업을 철저히 함으로써 ‘제국주의’ 사상문화의 사소한 요소(모기)도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겪었던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 1990년대 중반 김일성 사망, 자연재해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남한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하였고, 최근 농업과 경공업 등에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플러스 성장을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날 ‘고난의 행군’ 시기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랜 기간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부분적으로 사회질서가 이완되고 주민들의 불만 등이 내재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짐들이 북한을 붕괴에 이르게 하는 보편화된 현상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이미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북한 당국은 외부 사조 유입을 경계하면서 체제선전과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국경 통제 등 내부 단속을 통한 주민통제 시스템도 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의 형성은 물론, 불만세력의 집단화도 근원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주변국들도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바라지 않고 있다. 북한이 붕괴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이에 따른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불안정성 증대가 자국의 이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주변국들이 비록 제한적이지만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25

북한의
통일방안과
그 내용은?

■ 북한은 1960년 8.15 해방 15돌 경축대회에서 처음으로 남북의 제도를 그대로 두는 과도적 형태인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을 제기하였고, 1973년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 국호에 의한 연방제 실시와 유엔 가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고려연방제’를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연방제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주한미군 철수 등을 제시해 왔다.

한편,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면서 종전처럼 통일까지의 과도적 조치로서의 연방제가 아니라 완성된 통일국가 형태로서의 연방제를 주장하였다. 그 내용은 조국통일의 기본원칙,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연방제의 구성원칙과 운영원칙, 10대 시정방침으로 나눌 수 있다.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으로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제시하였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남한의 군사파쇼 통치의 청산 및 사회의 민주화 실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폐지와 모든 폭압통치기구들의 철폐, 모든 정당·단체의 합법화 및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투옥된 민주·애국인사들의 석방, 유신체제 청산 및 민주주의적인 정권교체, 한반도 긴장완화와 전쟁위험의 제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내정불간섭 및 ‘두 개의 조선’ 책동의 중지 등을 요구하였다.

‘연방제의 구성원칙과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과 북은 상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남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고 그 밑에서 남북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한다. 둘째,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남·북·해외의 대표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그 상임기구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남북의 지역정부를 지도하고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한다. 셋째, 연방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며,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적·군사적 동맹이나 블록에도 가입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

‘10대 시정방침’이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시행하여야 할 정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은 ①자주적 정책 실시, ②민주주의 실시 및 민족대단결 도모, ③남북 경제 합작과 교류 및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④과학·문화·교육교류 및 발전, ⑤교통·체신의 연결 및 자유로운 이용 보장, ⑥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 증진, ⑦

남북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및 민족연합군 조직, ⑧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익 옹호, ⑨통일 이전 남북의 대외관계에 대한 올바른 처리 및 지역정부 대외활동의 통일적 조절, ⑩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우호관계 발전 및 평화애호적 대외정책 실시 등이다.

1990년대 북한의 연방제는 약간의 전술적 변화를 보인다. 북한은 1980년대 말 구소련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 등으로 체제 유지에 불안을 느끼게 되자 남북공존을 모색하였다. 북한은 1988년 신년사와 정권 창건 기념사에서 남북공존의 원칙을 제시하고, 1991년 신년사에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제기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중앙정부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할 것임을 밝혔다. 이 같이 수정된 연방제는 통일보다 체제 보존에 역점을 두고 있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보다 수세적인 성격을 지닌다.

한편,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의미에 대하여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2000.10)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통일방안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이른바 ‘선결 조건’은 여전히 ‘남조선혁명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의 운영원칙으로 북한은 남북의 제도를 그대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두 제도에 의한 연방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연방국가 수립 이후의 정책으로 제시한 ‘10대 시정방침’은 통일 이전에 남북 간에 실시되어야 할 교류 등에 관한 내용이다. 국호, 국가형태, 대외정책 노선 등 남북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연방 헌법 등 연방 형성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으며, 연방정부의 구성방법이나 연방정부와 지역정부 간 관계설정에 있어서도 논리적 취약성이 드러난다. 이처럼 북한의 통일방안은 북한 체제의 규범적 당위성에 기초한 것으로, 남북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통일방안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6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란?

■ 선군정치는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의 본격적인 가동이 준비되던 1995년 1월 1일 김정일이 북한군 다박술 초소를 시찰하면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직을 폐지하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하면서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면서, 선군정치는 북한 통치의 핵심 기치로 등장하였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 정치”이자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데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김정일 동지의 특유의 정치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선군정치 방식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영도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하며 북한 사회의 발전적 추동력을 제공하는 집단으로서 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선군정치는 군의 영향력을 북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 드리우고 있다. 선군정치 하에서 군은 지도자와 사회주의 체제의 옹호를 위한 중심 기구로 위상이 제고되었으며, 군 인사의 정치 참여가 공식화되고 전 사회적으로 군사적 기풍을 진작하는 등 정치와 사회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선군정치가 제기된 배경은 김일성 사후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김정일 정권이 체제의 존립을 위해 권력의 근간을 당보다는 군에 의존하게 된 대내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극심한 경제난은 당이 인민에게 배급 등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제공하고 인민은 정권에 대한 지지 및 정통성을 부여해 왔던 사회주의적 후원주의 체제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선군정치는 군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인민경제의 회복을 꾀하는 한편, 당의 저하된 사회통제 기능을 군 조직을 통해 보완 및 대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의 내적 정통성을 제공하는 당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군을 활용하여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만회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선군정치의 또 다른 배경은 외교적 고립 및 대외 안보위협과 이로 인한 북한의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소련 붕괴 이후 가속화된 북한의 외교적 고립과 최근 수년 동안 지속된 미국과의 대결구도는 북한의 안보불안과 자위적 군사력에 대한 요구를 가중시켰고, 사회 내에서 군의 위상을 강화시켰다. 오랜 기간의 대치 상태와 그로 인해 축적된 거대한 군 조직 또한 선군정치가 제기된 국내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군정치는 군을 인민의 삶과 직접 연계시키면서 군에 대한 인민의 의존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구가 아닌 군이 사회 내의 방대한 연결고리를 토대로 다각적 사회통제를 시도하는 당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군민일치라는 기치에도 불구하고, 선군정치는 지도자와 인민 사이에 군이라는 거대한 사회 외부조직이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경제적 위기 속에서 정권의 정통성 결여에 직면하고 외교적 고립 속에서 체제 존립의 위협을 경험하는 북한 정권에게 선군정치는 정권 유지를 위한 선택이자, 산적한 대내외적 문제들 속에서 체제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경제난과 외교 고립이라는 핵심 난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선군정치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군정치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선군정치사상이 주체사상을 대체하여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부상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까지는 선군정치사상은 주체사상에 대응하는 이념체계라기보다는 김정일 정권의 정치 슬로건 성격이 강하며, 선군정치사상이 독자적인 통치이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론적 구성과 내용의 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7

북한
권력기구의
특징은?

■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보편적으로 권력이 당에 집중되며,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조선노동당은 타 기관의 상위에 위치하며 모든 정책은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서 추진된다. 1998년 개정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최근 선군정치가 강조되면서 당의 주도권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북한은 ‘군 중시의 당·국가체제’로 규정하고 선군정치란 당의 지도 하에 군사 선행의 원칙을 실현시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1998년의 헌법개정은 주석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및 내각 총리에게 권력을 배분하였다. 그러나 국방위원장이 국정을 주도하면서 공식적 국가수반(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실질적 권력자 사이의 괴리가 일어나는 과도기적 정부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김정일은 현재 당 비서국 총

비서 및 정치국 단일 상무위원의 지위를 겸임하면서 북한 인민군을 통수하는 최고사령관이자 국방위원장의 자격으로 북한 통치의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공식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기관이다. 헌법과 법령의 제정 및 수정·보충,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원회 및 최고인민회의, 내각 등의 구성원 선출 및 소환, 조약 비준 및 폐기 등의 권한을 가진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통상 인구 3만 명당 대의원 1명을 선출하며, 1년에 한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한다. 최고인민회의의 회의는 대의원 2/3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되며, 정책 결정이나 법령 채택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헌법은 대의원 2/3 이상이 찬성하여야 개정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설조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 및 명예부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조약의 비준과 폐지, 외교대표의 임명 및 소환 결정, 대사권 및 특사권 행사 등 대외업무를 총괄한다. 현재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이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국방위원회는 본래 중앙인민위원회의의 부문별 위원회에 속했으나 1992년 7차 헌법에 의해 독립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1998년 개정 헌법에서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격상되었다. 국방위원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및 복수의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방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국방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국방정책과 국방건설사업 주도, 주요 군사간부의 임명과 해임,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등이다. 국방위원장은 국방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국방위원회는 산하에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를 두고 군과 정보라는 국가안보의 양대 요소를 관할한다.

내각은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相)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기는 5년이다. 현재 내각은 3위원회, 30성, 1원, 1은행, 2국 등 37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내각은 국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및 경제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관할한다. 현 내각 총리는 김영일이며,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한다. 내각에 소속된 각 위원회 및 성은 부문별 집행기관이자 관리기관으로, 내각의 지도 하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지도·관리한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당이 국가의 정책결정기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입법부 기능의 최고인민회의, 행정부 기능의 국방위원회와 내각, 사법부 기능의 재판기관이 법 제정과 집행 및 해석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삼부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로 특징지어지는 북한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운용원칙인 권력분립이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의미를 갖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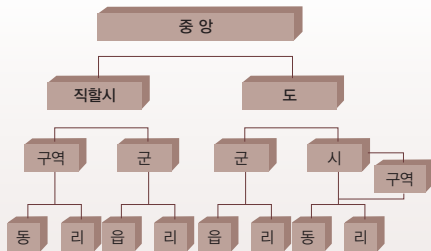
28

북한의 행정구역은?

북한의 행정구역은 평양, 나선 등 2개 직할시와 9개의 도로 구성되어 있다. 평양시는 구역과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는 군과 시로 나누어져 있다.

구역은 다시 동과 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리보다는 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개 군에 하나의 읍이 있어서 군소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동과 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청진, 함흥과 같은 몇몇 대규모 시는 직할시가 아니지만 구역이 있으며, 구역 밑에 다시 동과 리가 있다. 이들 시(구역)·군은 노동자구를 포함하는 경우도

● 북한의 계층별 행정구역 조직도 ●



있다. 북한의 계층별 행정체계를 도표화하면 옆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주권계층으로는 도(직할시)-시(구역)·군의 2단계이나, 행정계층은 동·리를 포함하여 3단계이다.

북한에는 다음 표와 같이 총 147개 군, 25개 시, 33개 구역이 있는데, 이는 다시 3,230개의 리, 1,134개의 동, 267개의 노동자구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총 205개의 중간계층단위인 시·군·구역이 4,631개의 동·리·노동자구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하나의 중간계층단위인 시·군·구역이 약 20여 개의 하부계층단위인 동·리·노동자구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동이나 리가 최말단 행정구역이나, 동과 리 밑에 각각 인민반*과 작업반이 있으며 작업반 밑에 다시 분조가 있다.

● 북한의 지방행정구역 현황 ●

직할시·도	시			군	
	도 소재	일반시	수		
평양직할시			-	강남, 중화, 상원, 강동	4
나선직할시			-		-
평안남도	평성	안주, 개천, 순천, 덕천, 남포	6	대동, 온천, 증산, 평원, 문덕, 속천, 성천, 영원, 북창, 맹산, 양덕, 회창, 신양, 대흥, 은산, 강서, 천리마, 대안, 용강	19
평안북도	신의주	구성, 정주	3	창성, 피현, 용천, 염주, 철산, 동림, 선천, 광산, 운전, 박천, 영변, 구장, 향산, 운산, 태천, 천마, 의주, 삭주, 대관, 동창, 벽동, 신도	22

* 동은 보통 30~40개의 반으로 구성되며 반은 다시 30~40가구로 구성된다.

직할시·도	시			군	
	도 소재	일반시	수		
자강도	강계	만포, 희천	3	장강, 시중, 자성, 중강, 위원, 초산, 우시, 고평, 송원, 성간, 전천, 용림, 화평, 동신, 낭림	15
양강도	혜산		1	운흥, 보천, 백암, 갑산, 삼수, 풍서, 김형직(후창), 김정숙(신평), 삼지연, 김형권(풍산), 대흥단	11
황해남도	해주		1	벽성, 강령, 웅진, 태탄, 장연, 용연, 삼천, 송화, 과일, 은율, 은천, 안악, 신천, 재령, 봉천, 배천, 신원, 연안, 청단	19
황해북도	사리원	송림, 개성	3	황주, 봉산, 연탄, 은파, 서흥, 평산, 금천, 인산, 토산, 신계, 곡산, 연산, 신평, 수안, 장풍	15
함경남도	함흥	신평, 단천	3	함주, 정평, 금야, 고원, 요덕, 장진, 부전, 신흥, 홍원, 북청, 덕성, 이원, 허천, 낙원(퇴조), 영광(오로)	15
함경북도	청진	김책(성진), 회령	3	부령, 무산, 경성, 길주, 화대, 명천, 어랑, 연사, 온성, 화성(명간), 새별(경원), 은덕(경흥)	12
강원도	원산	문천	2	천내, 안변, 고산, 통천, 고성, 금강, 창도, 김화, 회양, 세포, 평강, 철원, 이천, 판교, 법동	15
2직할시 9도	25개 시			147개 군	

29

북한의
재판절차는?

■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 법은 당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은 체제 특성상 법에 대한 정치 우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법규보다는 당의 방침이나 교시 등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도 범죄 행위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거쳐 처벌하도록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률을 구비하고 있다. 재판절차에 관해서는 1976년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였고, 판결에 따른 집행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1997년 판결판정집행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변호를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3년 변호사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의 형법을 보면, 범죄행위에 대해 노동단련형, 유기노동교화형, 무기노동교화형, 사형 등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북

한에서는 일반범죄와 정치범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범죄의 성격에 따라 일반범죄는 인민보안기관, 정치범죄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수사와 예심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에서의 형사처리 절차는 수사→예심→기소→재판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북한에서 사법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수사와 예심을 담당하는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소,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소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소구성법에 따르면 북한의 재판기구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재판소로는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 각급 재판소가 관할하는 재판대상을 살펴보면 인민재판소는 도재판소, 특별재판소,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 사건만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도재판소는 관할지역 내 인민재판소의 재판을 감독하며, 제1심 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재판소는 도재판소,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의 상소·항의사건을 담당한다.

제1심 재판은 기본적으로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시행한다. 북한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기소된 내용에 대해 사실심리, 검사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범죄사건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다수결의 방법으로 판결을 채택하게 된다.

북한의 재판절차에서 특징적인 점은 ‘인민참심원’ 제도이다. 인민참심원은 관할 인민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되며, 재판과정에서 직접 사건에 대한 판단과 해결에 참여한다. 일반 재판은 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되며, 특별재판인 경우에는 참심원이 3명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북한의 인민참심원 제도는 참심원이 판사와 동등한 지위에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제도로, 배심원은 사실문제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판사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영미의 배심원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재판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만,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국가나 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독특한 재판절차로서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현지재판(인민재판)이 조직되고 있으며, 반체제 행위와 사회일탈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처형이 실시되고 있다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공개처형은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필요시에 대중이 집결한 장소에서 실시된다고 한다. 학교와 기업소, 농장 등에 공개처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미리 통보되며,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경력과 죄명을 공개하고 주로 총살 형태로 공개처형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북한은 인권의 개념을 ‘서방식 인권’과 ‘우리식 인권’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보편적 가치인 인권은 주권을 초월한다는 서방 중심의 인권 논의를 배격하면서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인권 문제를 내정간섭 혹은 주권침해로 규정한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과정에서 서구의 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여기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인권 문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 인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 인권은 정치·경제·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 권리이다”(노동신문, 1994.11.4)라고 규정하고, 국권의 수호가 인권에 우선하며, 자주권이 수호될 때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즉, 인권은 곧 국권이라는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외무성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UN 등 국제회의에는 외무성 직원 등이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 외무성, 조국평화통일협회, 조선법률가위원회 등 해당기관 명의의 성명·답화 등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반발과 협조'라는 이중 전략을 취한다. “인권 문제는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적인 패권추구 의도로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유엔 인권 위원회와 유엔 총회의 인권결의안 채택 등에 대해서는 체제안보 논리를 내세워 내정간섭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에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 체제에 위협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엔 인권레짐 등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등 일부 협조적 자세도 보이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에 인권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 인권레짐이 개최하는 세미나·교육 및 기술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의 인권대화도 개최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법을 연구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친북 국가들에 미국과 EU의 북한 인권문제 거론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 당국은 1990년대 이후 법률 정비를 통하여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외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개정 시 거주와 여행의 자유 조항(제75조)을 신설하였고, 유엔인권이사회 권고에 따라

유추해석 조항(구 형법 제10조)을 폐지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수용하는 조항(형법 제6조)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외형적인 인권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요시하고, 인권을 체제 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인식하는 북한의 체제 특성상 개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1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현황은?*

■ 북한은 1960년 영변에 핵시설을 건설하고, 1970년대에 핵연료의 정련·변환·가공 기술을 집중 연구하였다. 1980년대 이후로는 5MW 원자로를 가동하고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여 핵물질을 확보하는 등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고, 이와 병행하여 고품실험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94년 북미 기본합의 이전에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 10~14kg으로 핵무기 1~2개를 제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북한의 주장대로 2003년과 2005년에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을 경우 30여 kg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적 대북제재와 압박이 가중되자 2006년 10월 3일 핵실험 계획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였으며,

* 국방부가 발간한 『2006 국방백서』 관련 내용 인용.

** 광석 상태의 우라늄이 정련-변환-농축-가공 단계를 거쳐 원자로에서 사용된 후, 재처리·재활용 및 고준위 폐기물 영구처리되기까지의 전 과정.

그로부터 7일 만인 10월 9일 전격적으로 지하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한편 북한이 해외에서 원심분리기 관련 부품을 도입하는 등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추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유관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정보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중·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사정거리 300km의 스커드-비(SCUD-B)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후 사정거리 500km에 이르는 스커드-시(SCUD-C)를 생산하여 작전배치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사정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후 작전배치하였다. 1998년 8월에는 대포동 1호 발사 실험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운반체의 엔진연소와 탄체의 다단계 분리 등 여러 기능을 실험한 것으로 보아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를 개발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5일에 대포동 2호 미사일과 스커드(SCUD), 노동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에 긴장을 조성하였다. 대포동 2호는 사정거리가 6,700km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나, 운반체의 무게를 줄이거나 3단계 추진 로켓을 추가 장착할 경우, 사정거리는 더 연장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은 1961년 12월 김일성의 ‘화학화 선언’* 이후 독자적으로

* 1960년 12월 25일 인민군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인민군대를 화학화하고 화학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라”고 지시.

정책을 수립하여 화학무기를 연구하고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학무기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부터는 독가스와 세균무기를 생산해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북한은 여러 개의 화학공장에서 생산한 약 2,500~5,000톤의 신경작용제 등 각종 작용제를 전국적으로 분산된 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며, 탄저균·천연두·콜레라 등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북한 경제난의 원인과 그 해소 전망은?

■ 북한은 현재의 경제난을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의 붕괴,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갈등과 미국의 경제봉쇄 등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1990년대 중반의 자연재해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이미 1970년대 중반 경부터 성장 둔화 및 물자 부족 등 침체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북한 경제난의 첫 번째 원인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구조적 모순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북한도 경제관리의 과도한 중앙 집중, 이념을 우선시하는 경제 관리, 중공업 부문과 양적 성장을 위주로 하는 경제성장 방식, 국영기업들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무관심, 노동에 대한 물질적 인센티브의 무시에 의한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다. 그 결과 1960년대 이후 4회에 걸쳐 시행된 경제계획들이 항상 실적 부진으로 완충기를 두는 등, 196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경제계획 달

성에 장애가 나타나고 있었다.

두 번째 원인은 국제 분업체계를 무시한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국내 시장이 작은 소규모 경제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성장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력갱생 노선을 채택하고 구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 간 ‘우호적 교역’에 의존하는 대외경제협력 방식을 고수하였고,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는 대외경쟁력을 상실하였다.

세 번째로는 북한 당국이 1960년대부터 군사·경제 병진노선에 의해 군사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군수산업 위주의 중공업 중심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극심한 산업 간 불균형이 초래된 점을 들 수 있다. 군수산업은 국민소득 증대와 관련이 없고, 막대한 자본 축적이 요구되는 비생산적 산업부문이다. 그리고 경공업 등 소비재산업과 연계성이 없는 중공업 우선 노선은 산업 발전을 왜곡시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하락시켰다.

네 번째로,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구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우호적 교역’이 중단되면서 단순재생산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입물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북한은 자립경제를 구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았던 1960년대 상반기까지도 구소련 등의 원조가 절대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사실상 국민총생산의 일정 부분이 대외 경제부문에 의존해 있었다.

결국, 북한의 경제난은 누적된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오다가, 1990년대 이후 대외경제관계의 혼란과 함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1998년까지 연평균 -3.8%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던 북한 경제는 1999년부터 미미하지만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였다. 이는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이 확대, 1998년부터 대규모로 이루어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06년 이후로는 대규모 수해의 영향 등으로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향후 북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북한은 2002년 7월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의해 경제 회복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이 추진하는 조치 자체도 초기 중국의 개혁·개방 수준보다 제한적인데다 자체 자원이 고갈되어 산업생산력 회복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북미·북일관계 개선이 곤란하고 국제사회의 지원과 자본 유입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난은 핵문제 해결을 통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북미·북일관계 등 대외관계를 호전시키며, 나아가 기존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33

북한의
시장 실태는?

■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로 운영되는 북한에서 시장은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상업유통은 국가의 계획과 통제 속에서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예외적으로 농민시장은 인정해 왔으며, 주로 농민들이 개인부업으로 생산한 농·축산물의 일부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의 시장은 인민시장(1950년 이전)→농촌시장(1950년)→농민시장(1958년)→농민시장 외에 일일시장 개설(1984년)→종합시장(2003년)으로 변천해 왔다.

북한의 농민시장은 1980년대 중반에 생필품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불법적으로 증가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혹독한 경제난과 함께 공식적인 상품유통체계가 마비되면서 생존의 차원에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애초에 북한 당국은 국영상업망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민시장을 허용하였으나, 농민시장은 계획경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점차 활성화되었고, 다른 한편 암시장으로 변모해 갔다.

농민시장에서 거래가 금지되었던 품목인 곡물류와 중국과의 변경무역 또는 밀무역으로 들어 온 각종 생필품들이 공공연히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배급보다는 시장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 농민 시장은 국영상업망을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생필품난이 한창이던 1984년에는 농민시장 외에 일일시장이 만들어 졌다. 북한 당국은 1987년과 1992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폐지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 1993년에 쌀, 옥수수 등 곡물 판매를 묵인하였고 이후 공산품 거래도 묵인하였다. 그 후 농민시장이 암시장화되고 모든 상품이 거래되는 경향이 나타나자 1999년 북한 당국은 또다시 시장에 대한 전국적인 통제를 시도하였다. 2002년에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를 실시하면서 농민시장을 강력히 통제하고 국영상업망을 정상화시키려고 했지만 충분한 곡물과 생필품을 확보할 수 없어 국영상점 자체가 폐쇄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경제난으로 북한은 이미 시장이 없이는 생필품 유통이 불가능한 체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운용되어 오던 북한의 시장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은 2003년이였다. 북한 당국은 기존의 농민시장을 상설시장 형태인 종합시장으로 개편하였다. 종합시장은 시장관리소에 의해서 국영기업 형식으로 운영되며, 여기서는 군수품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상품 거래가 가능하다. 상인들은 매대 면적과 위치에 따라 사용료를 매일 시장관리소에 납부하고, 소득규모에 따라 ‘국가납부금’을 매월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그리고 10일에 한 번씩 중요 상품의 최고한도 가격을 설정하여 시장 입구의 게시판에 고시한다. 일반 주민은 물론 기업

소와 협동농장도 시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북한에서 종합시장 중 도매 시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평양의 ‘통일거리 시장’, 함북 청진의 ‘수남 시장’, 함북 나선의 ‘나진선봉(나선) 시장’, 평북 신의주의 ‘신의주 시장’, 평남 평성의 ‘평성 시장’, 함남 함흥의 ‘사포 시장’ 등이다. 시장에는 많은 상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을 분류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돈주’, 중간상인, 달리기 상인(일종의 현지구매 상인), 되거리 상인(생산자로부터 물건을 받아 비싸게 되파는 상인), 매대 상인, 메뚜기 상인 등이 있다. 이들이 배급이 중단된 북한 전역으로 상품을 유통시키고 있다. 현재 북한의 시장은 오로지 중국에만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 상품의 점유율이 매우 높아서 유통 상품의 70% 이상이 중국산이다.

북한 당국은 종합시장 허용 조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장이 사리사욕과 빈부격차를 낳고 사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항상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일례로, 2004년 4월에는 도매반을 설치하여 개인 상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몰아내려고 한 바 있다. 최근 수 년 동안에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여성들의 연령 제한, 장사 품목 수의 제한, 시장 영업시간의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는 단속을 피해서 장사하는 메뚜기 장사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2008년부터는 평양, 함흥, 순천 등에서 매월 3회만 개장되는 10일장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또한 거래품목도 제한하여 시장에서는 농축산

물만 거래하고 공업품은 국영상점, 식량은 각 구역의 배급소에서 취급하도록 하였으며, 중국산 상품의 시장 유통을 금지하고 국영상점 등 국가가 관리하는 유통망으로 흡수하고 있다.

● 평양 통일거리 시장 ●



34

북한의
식량 배급
체계는?

■ 북한의 배급제도는 두 가지의 부분적 경제제도가 합쳐진 것이다. 하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협동농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식량 분배 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도시민과 비(非)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배급제도이다. 북한에서는 이 두 가지 제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식량에 관한 한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배급제를 실시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농민들은 매년 가을 추수가 끝난 직후 협동농장에서 결산분배를 받는다. 결산분배란 협동농장의 한 해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계산하고 난 후, 그 소득을 구성원인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결산분배를 통해 농민들은 향후 1년 동안 소비할 식용 곡물을 현물로 분배받으며, 나머지는 모두 화폐로 분배받는다.

각 농민이 1년 동안 식용으로 소비할 곡물의 양은 국가가 산업부문 노동자들의 식량배급 기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어느 농민이

전(前)해보다 많은 곡물을 생산하더라도, 그가 현물로 받아 소비할 수 있는 곡물의 양은 국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지 화폐소득이 전해에 비해 늘어날 뿐이다. 국가는 협동농장이 농민들에게 식용으로 분배하고 남은 곡물 가운데 다음 해 농업생산에 필요한 종자나 사료용 곡물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을 수매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에서 수집한 곡물에 해외로부터 수입한 곡물을 더해 도시민들에게 식량을 배급한다. 도시민들은 1년치 식량을 미리 받는 농민들과는 달리 보통 한 달에 두 번 식량배급을 나누어 받는다. 도시민들은 소속 직장이나 기관에서 발부하는 배급표를 수령하여 이를 가지고 자기가 속한 식량공급소에 찾아가 매월 두 번씩 국정가격으로 식량을 구매한다.

북한은 1980년대 초반까지 개인적인 곡물생산과 거래를 철저히 통제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배급제를 통하지 않고는 곡물과 같은 주요 식량을 구입·소비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 물론 과거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일종의 식량배급제를 실시한 적이 있었으나, 배급제의 대상이 주로 도시민에 한정되어 있거나, 배급제의 실시 시기도 매우 짧았다. 이러한 점과 비교해 볼 때, 북한과 같이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십 년에 걸쳐 철저한 식량배급제를 유지해 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배급제도는 1990년대 이후 경제난으로 계획경제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사실상 와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심각한 식량난으로 식량배급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나 기업소·기관의 근로자들이 텃밭이나 떼기밭 등을 경작하여 필요한 곡물 일부를 스스로 조달

하거나 시장에 내다파는 현상이 나타났고, 당국은 이를 어쩔 수 없이 묵인하거나 인정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이렇게 개인들이 생산한 곡물들을 개인당 배급량에서 공제하기도 한다.

또한 북한 당국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7.1 조치)를 시행하면서 식량의 국정가격을 그 당시 시장가격 수준으로 약 500배 이상 올림과 동시에, 국가가 협동농장으로부터 수매하는 가격보다 월등히 낮았던 식량의 국정가격을 오히려 수매가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사실상 배급제에서 판매제로의 변모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7.1 조치 이후 식량공급소라는 명칭을 식량판매소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국경을 통해 밀무역으로 식량을 사들여 오거나 아니면 무역기관을 끼고 식량을 사들여

● 북한의 식량공급소 ●



국정가격보다 높은 시장가격으로 장마당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등장했다. 이에 북한은 2005년 종합시장에서의 식량 거래를 금지시키고 식량을 매점매석하는 상인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5

북한의 식량(곡물) 수급 현황은?

■ 북한은 이미 1980년대부터 인구 대비 경지면적의 부족, 사회주의적 집단영농으로 인한 농업생산력 침체, 이른바 ‘주체농법’이라는 농정의 실패 등 구조적 요인으로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고 있었다. 이와 같은 내부적 요인에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몰락, 미국의 경제봉쇄 등 외부적 요인, 수해·가뭄 등 잇따른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곡물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1990년대 중후반에는 곡물 생산량이 400만 톤 이하로 하락했다. 이로 인해 당시 북한에서 심각한 기근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2000년을 넘어서면서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인다. 정부 추계를 보면 2003년 이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00만 톤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농업부문을 사회주의 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삼고 식량 증산에 힘을 쏟은 점, 남한 및 국제사회의 비료·농자재 지원, 양호한 기상 조건 등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북한 식량 부족의 내부적 원인은 여전히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곡물 생산량은 외부적 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일례로, 2006년과 2007년에는 대규모 수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북한의 곡창인 평안남도과 황해도 지역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어 곡물 생산량이 다시 하락하였다.

그렇다면 북한의 식량(곡물) 수요는 어느 정도나 될까? 2000년 이후 북한의 곡물 수요량은 현재 배급량 기준으로 추정할 때 연간 550만 톤 내외 수준이라고 한다.

● 북한 식량수급현황(1991 - 2008) ●

(단위 : 만톤)

연도	수요량	전년도 생산량	부족량
1991	520	402	118
1992	525	443	82
1993	524	427	97
1994	528	388	140
1995	534	413	121
1996	529	345	184
1997	530	369	161
1998	495	349	146
1999	504	389	115
2000	518	422	96
2001	524	359	165
2002	536	395	141
2003	542	413	129
2004	548	425	123
2005	545	431	114
2006	560	454	106
2007	543	448	95
2008	540	401	139

자료출처: 통일부, 식량년도(전년도 11월~금년도 10월) 기준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북한의 곡물생산은 대체로 연간 400만 톤 수준으로, 북한의 곡물 수요량보다 연간 약 100만 톤 정도가 부족하다. 물론 이러한 부족분은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의 상업적 곡물 수입에 의해 일정 부분 충당된다. 그러나 북한 경제는 아직 침체 상태이고, 이에 따라 북한의 상업적 곡물 수입 능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이후 북한의 곡물 생산이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식량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북한의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00년 이후 자체 생산량 증대와 상업적 수입, 남한과 국제사회의 무상지원 등을 합친 북한의 실질적인 총 곡물공급량은 연간 500만 톤을 상회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연간 50만 톤 내외로 추정된다. 비록 아직까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수해와 같은 특수한 재난 상황을 제외한다면 1990년대 중후반과 같은 극심한 식량 위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북한 당국이 그간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받아 왔던 긴급 식량 원조를 개발원조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36

북한의
에너지 실태는?

■ 북한은 이른바 ‘주체의 경제’라고 불리는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를 건설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주체의 경제에서도 수입이 불가피했던 산업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너지 분야였다. 현대 경제를 운영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석유자원이 북한에는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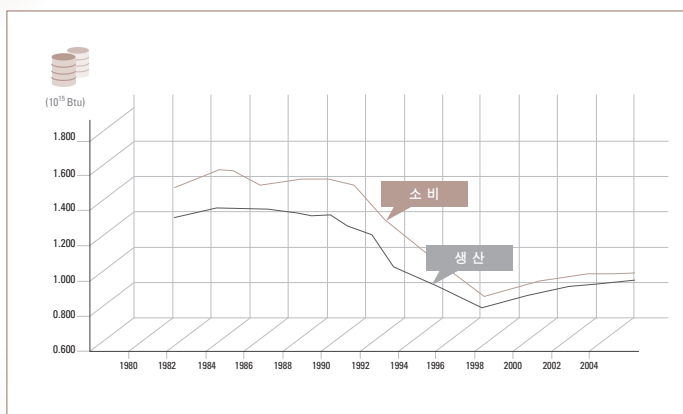
북한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석탄이었다. 석탄은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가격 역시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석유였다. 석유는 산업용·수송용 에너지원으로 석탄으로는 대체될 수 없으며, 전력의 생산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석유 수입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석유 수입이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중요 산업 및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공급이 감소

하고 전력 생산에도 차질이 생긴다. 이에 따라 북한 경제에서는 석유 수입이 불안정해지는 경우 단기적으로 에너지 공급체계를 석탄 위주로 재편하려는 시도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석탄 공급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해 결국에는 전체 에너지 공급체계가 혼란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석유와 전력 에너지의 부족에 따른 산업 생산의 차질로 석탄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 물자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을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석유의 수입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 북한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1980~2004 ●



자료출처: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통계 데이터베이스(2004)

그런데 1989년 구소련 붕괴로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관계가 혼란에 빠지면서 석유 수입은 크게 줄어들고, 그 결과 198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북한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하락한다. 더욱이 이러한 에너지 공급량의 감소가 1990년대 초반 산업생산의 차질로 이어지면서 석탄에 의한 에너지 공급마저 위축된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후반에는 전체 에너지 공급과 소비가 과거의 절반 정도로 폭락하였다. 물론 이처럼 열악한 에너지 사정은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소폭 회복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세는 과거와 같이 석유 수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2000년 이후 북한의 대외거래가 점차 개선되어 산업 활동이 소폭 회복되면서, 석탄과 같은 국내 에너지원 개발 환경이 조금 나아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는 현재 북한의 에너지 공급이 1990년대 중후반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졌으나,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의 선제조건으로 중유 지원 등 에너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북한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철저히 석탄 위주로 되어 있다. 국제 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2004년 북한의 총 에너지 소비 가운데 67%를 석탄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석유와 전력은 전체의 각각 6%와 18%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대 경제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에너지원이 석유와 전기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는 현재 북한의 에너지 현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7

북한의 지하자원 분포 현황은?

■ 북한의 지하자원 중 대표적인 금속광물로는 금, 은, 동, 철, 아연, 중석이 있고, 비금속광물로는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인상흑연이 있다. 에너지 광물자원으로는 무연탄, 유연탄이 있고, 석골재도 중요한 지하자원으로 포함된다. 북한의 광물자원 매장량은 일제 시대의 탐사자료, 북한의 각종 보도자료, 수출입회사에서 나온 자료, 투자를 담보로 한 현지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치를 산출하고 있다.

이러한 광물자원은 북한 국토의 약 80%에 분포되어 있다. 이 중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세계 1위로 알려져 있으며,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금, 운모, 형석 등의 매장량은 세계 10위권 이내로 기록되고 있다. 마그네사이트(MgO 45) 매장량은 40억 톤, 중석(WO₃ 65%) 매장량은 25만 톤, 몰리브덴(MoS₂ 90%) 매장량은 5만 4천 톤, 인상흑연(FC 100%) 매장량은 2백만 톤, 중정석은 210만 톤, 금 매장량은 2천 톤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은광은 황해북도 수안군과 연산군 경계지역인 언지산에서 동쪽 대각산까지의 수안과 홀동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또한, 평안북도의 동창군, 운산군 및 평안남도 회창군도 금은광 매장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연·아연광은 평안남도의 평성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평양시와 인접한 성천군과 동해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위치해 있는 함경남도 단천시, 자강도의 용림군과 송원군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철광석은 자철광, 적철광, 적·갈철광, 능철광의 4종류가 매장되어 있는데, 자철광은 함경북도 무산군에 매장되어 있다. 적철광은 함경남도 4군(이원군, 북청군, 덕성군, 허천군)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적·갈철광은 황해남도 3군(은율군, 신원군, 재령군)에 많이 매장되어 있으며, 철 함유량이 높고, 망간 광물이 1.5~12.5% 수반광물로 함유되어 있다. 능철광은 평안남도 개천시에 부존되어 있고, 철 함유량은 30~40%이며, 1.5% 이하의 망간과 0.15%의 인, 0.6%의 유황분이 포함되어 있다.

마그네사이트는 함경남도 동해 해안 쪽에 위치하고 있는 단천 서북방 용양리와 양천리로부터 양강도 백암, 남계 일대에 이르는 지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특히 단천은 노출된 것만도 길이가 7,600m, 깊이가 100~200m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마그네사이트 광산이다.

북한에는 무연탄, 초무연탄, 유연탄, 토탄 등 다양한 석탄자원이 부존되어 있다. 무연탄은 평안북부탄전, 평안남부탄전, 함남 고원·금야지구, 자강도 강계·전천지구, 양강도 혜산지구에 매장되어 있다. 평안북

부 탄전은 청천강 중·하류지역에 있으며, 매장량은 약 37억 톤으로 알려져 있다. 평안남부탄전에는 약 12억 톤의 무연탄이 매장되어 있다. 유연탄은 함경북도 북부탄전, 함경북도 남부탄전, 평안남도 안주탄전에 매장되어 있다. 특히 함경북도 북부탄전의 매장량은 약 18억 톤으로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온성군, 새별군, 회령시, 은덕군에 매장되어 있다. 평안남도 안주탄전은 매장량이 약 17억1천만 톤으로 평안남도 서해안 지역인 안주시, 문덕군, 숙천군 지역이다.

북한 지역에는 이와 같이 많은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유용광물 중에서도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는 석회석, 철, 마그네사이트, 금, 은, 동, 아연, 중석, 몰리브덴, 흑연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광물 종류는 약 20여 종으로, 잠재 매장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287조원으로 남한의 약 24배에 달한다. 그러나 신규 광산의 개발 부진, 채굴의 심부화, 장비의 노후화로 1990년대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비금속광물인 흑연, 인광석, 마그네사이트 등도 1990년대 북한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반적 경제난으로 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8

북한 화폐의
실제 가치는?

■ 북한 화폐의 실제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가격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북한에서 가격은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가가격제정국은 국영상업망을 통해 국가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해 국정가격을 결정하고, 주민들은 국영상점에서 이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한다. 시장가격은 국영상업망 이외의 거래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이다.

현재 북한 일반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은 3,000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자의 한 달 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쌀의 양은 국영상점에서는 68kg인 반면, 시장에서는 1.5kg에 불과하다. 화폐의 실제 가치는 화폐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즉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기초하여 얼마나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 '원'화의 실제 가치는 매우 낮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편 북한 화폐의 실제 가치는 미 달러화, 유로화 등과 같은 경화(hard currency)와 교환되는 비율, 즉 환율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북한의 환율제도는 일반 상품의 가격구조와 마찬가지로 이중 환율구조로 특징지을 수 있다. 북한의 환율은 국가가 정하는 공식 환율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시장 환율이 있다. 이러한 이중 환율구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7.1 조치)로 북한 원화의 미국 달러 환율을 시장 환율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이 당시 달러 당 2.2원 내외인 공식 환율을 153원으로 약 70배 인상하였다. 7.1 조치 이전 북한 원화의 시장 환율은 약 200원 정도였다. 그러나 이 조치 이후 시장 환율은 급상승하여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의 격차는 다시 확대되었고, 시장 환율은 공식 환율의 20배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 7.1 조치 이후 미국 달러 대비 북한 환율 추이 ●

(단위 : 원)

연 도	2002.8~12	2003	2004	2005	2006	2007
공식 환율(A)	153	145	139	140	141	135
시장 환율(B)	200~480	400~1,000	1,200~2,300	1,600~2,700	2,700~3,300	2,900~3,250
B/A(배)	1.3~3.1	2.8~6.9	8.6~16.5	11.4~19.3	19.1~23.4	21.5~24.0

이와 같이 북한 화폐의 실제 가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가능하면 외화를 보유하려고 한다. 북한 화폐를 장기간 보유하면 할수록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 구매력이 하락해 실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 당국은 외화가 중앙에 집중되지 않고 시장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중반부터 외화교환소를 설치하여 시장 환율과 유사한 수준의 환율로 외화를 교환해 주고 있다.

● 북한의 화폐 ●



39

북한에 사유재산 제도가 있으며, 상속이 가능한가?

■ 북한에서도 부분적으로 사유재산 제도와 상속이 인정되고 있다. 소유권을 규율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법률로 민법이 있는데, 북한 민법은 소유권을 소유주체에 따라 국가 소유권과 사회협동단체 소유권, 개인 소유권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개인 소유 재산은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 텃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사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북한 주민은 주택(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등을 소유할 수 있다(북한민법 제 58조, 제59조).

가장 중요한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살펴보면, 북한 주민은 토지를 소

유할 수 없으나(북한 토지법 제9조) 협동농장에서 텃밭을 이용한 개인 경작은 가능하다. 특히 텃밭 이용은 개인당 20~30평으로 제한되어 있지만(북한 토지법 제13조)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는 텃밭 등 개인 경작지 면적을 400평까지 확대해 주고 협동농장 외 토지의 개인 경작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북한민법 제50조는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리용권을 노동자, 농민, 사무원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주택공급은 중앙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반 주민에게는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만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살림집은 개인 소유가 가능하다고 한다. 북한 정권이 수립된 초기에는 개인 소유 가옥의 점유·이용뿐만 아니라 처분까지도 인정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임차의 목적물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 주택에 대한 점유와 이용은 인정되지만 주택에 대한 처분은 금지되어 있다. 돈 또는 물건을 주거나 받고 국가 소유의 살림집을 넘겨주었거나 받았거나 빌려 주는 행위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해진다(북한형법 제149조).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주택의 사적 소유와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주택난이 악화되면서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 민법은 개인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권실행방해제거청구권, 선의취득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우선 소유권자는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경우 그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소유권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북한민법 제40조, 제41조). 또한 북한 주민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서 넘겨받는다라는 것을 알면서 취득한 공민을 상대로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북한 민법 제62조).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상속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령 없이 가족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2년에 상속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1장 상속법의 기본, 제2장 법정상속, 제3장 유언상속과 증여, 제4장 상속의 집행 등 총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 57개 조항에서 상속에 관해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①노동에 의한 분배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②국가 또는 사회의 추가적 혜택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③개인부업경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④살림집, 도서, 화폐, 저금,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운전기재(운송수단), ⑤각종 재산상 청구권과 채무, ⑥그 밖에 다른 공민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같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 등이다(북한 상속법 제13조). 이밖에 이 법은 상속의 순위 및 상속분, 상속의 방식, 한정상속, 상속의 포기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40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현황은?

■ 최근 북한과 중국의 경제교류는 무역과 투자의 양면에서 모두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북·중 교역은 1990년대 초반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해 중국이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이후 1990년대 중반 중국이 북한에 대해 우호가격제 폐지와 경화 결제를 요구하고,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1999년에는 3억 달러 규모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1년 북·중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교역도 다시 활성화되면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서 북·중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000년 24.7%에서 2007년에는 67.1%로 높아졌다.

● 북한의 대중국 무역 ●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무역액 (비중)	488 (24.7)	737 (32.5)	738 (32.7)	1,022 (42.8)	1,385 (48.5)	1,580 (52.6)	1,700 (56.7)	1,974 (67.1)
수출	37	166	271	395	586	499	468	582
수입	451	571	467	628	800	1,081	1,232	1,392
무역수지	-414	-404	-197	-232	-214	-522	-764	-810

자료출처: 통계청

북한은 중국에 수산물, 목재, 과일류, 광물, 철강, 아연, 알루미늄 등 기초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대중국 수입품은 식용육류, 곡물류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전기기기, 플라스틱 등 생필품, 그리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연료, 기계, 철강 등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7.1 조치)를 발표한 이후 중국의 대북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원개발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2005년 북한과 중국은 「투자 장려 및 보호 협정」을 체결하였고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북·중 경제관계는 과거의 단순 교류나 중국의 대북지원과 같은 차원을 넘어 중국의 대북 투자 확대 및 양국 간 제도적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대북 경제전략은 소극적인 경제 지원에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 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쪽으로 선

회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경제전략의 변화는 동북 3성 개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2005년 6월 중국의 동북 3성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접경지역인 북한의 신의주와 나진·선봉지대가 동반 성장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대북 투자는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개발권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을 획득하는 등의 보상무역과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광물 등 자원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어업자원과 목재, 컴퓨터, 자전거, 트랙터, 건축자재, 유리 등의 제조업 분야, 서비스 및 유통 분야에의 합영 형태의 투자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41

북한의
교통·통신
현황은?

■ 북한의 지형은 대부분 험준한 산악이기 때문에 철도가 주축을 이루고 도로, 하천 및 해상교통은 철도와의 연계를 위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철도 및 도로망은 지대가 낮은 서해안 지역에 발달되어 있으며, 동해안 지역에서는 해안선을 따라 철도와 도로망이 집중되어 있다.

철도망은 서해안축, 동해안축, 동서횡단축으로 나뉜다. 서해안축으로는 개성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등 6개 노선이 있고, 동해안축으로는 평양-나진 간 평라선 등 8개 노선이 있으며, 동서횡단축으로는 평양-고원 간 평원선 등 2개 노선이 있다. 국제철도 노선으로는 신의주-단동, 남양-투먼, 만포-지안, 두만강-함산의 4개 노선에 화물열차 또는 여객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대중국 철도노선의 경우 평양-베이징 간 국제열차가 운행된다.

북한은 철도수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존 철도를 전기화·광궤도화하고 새로운 철도를 부설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6년 말 현재 북한의 철도 총연장은 5,235km이고 그 중 98%가 단선 철도이며, 전철화 구간은 4,211km이다. 지하철은 평양에 놓여 있으며 총연장은 34km이다.

북한의 도로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경사가 심하고 도로 폭이 협소하며 대부분 비포장으로 되어 있다. 북한의 도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되는데, 도로 총연장은 2006년 말 현재 25,544km이고, 고속도로는 평양-원산 간 고속도로 등 8개 노선으로 총연장은 724km이다.

북한은 해안선이 동서로 단절되어 있고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 러시아 모두 육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운부문의 수송분담률이 매우 낮다. 항만은 입지조건이 유리한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발달되어 있으나, 1986년 5만 톤 급 선박의 통과가 가능한 서해갑문(남포갑문)이 완공되어 서해안의 해상수송능력은 물론 대동강, 재령강을 이용한 하천수송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항공의 경우 국내노선으로는 평양의 순안에서 삼지연, 어랑, 선덕, 원산 등의 구간이 부정기적으로 운항된다. 이용객은 주로 당 간부나 외국인 등이다. 국제공항으로는 순안비행장이 유일하며, 북한의 유일한 민영항공인 고려항공은 중국, 러시아, 태국 등에 취항한다. 그러나 북한의 항공노선은 승객 부족 등으로 수시로 결항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북한에서 통신이란 일반적으로 신문, 방송, 잡지 등 각종 매체 및 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나 사실의 전파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으로 분류하는 통신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북한의 통신은 그 기능이 행정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에게 정책을 전파하는 데 국한되어 있다.

북한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통신을 ‘체신’으로 부르고 있으며, 전신, 전화, 우편, 방송 등 여러 가지 체신망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체신 사업은 전기통신(유·무선 전신, 전화), 우편통신(편지, 소포, 송금), 방송(유·무선, 라디오, TV) 등 3개 부문으로 분류되며, 내각의 체신성을 비롯하여 체신관리국과 체신소, 전신전화국, 방송국 등에 의하여 업무가 수행된다.

북한의 대내 전화망은 평양과 도·시·군·리 간에 종적으로 연결된 중앙집중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양을 비롯한 주요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동교환시스템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UN의 지원사업으로 북한 전역에 광섬유 통신망이 가설되어 2000년대 이후로는 자동 시외전화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국제통신망은 1986년 3월 평양 근교에 위성통신지구국이 건설되면서 위성을 통한 직접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3년 10월 현재 총 6개국과 위성 또는 광케이블을 통해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는 이들 6개국을 통한 중계방식으로 통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동통신의 경우 2002년 11월 평양과 나선에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나 2004년 6월 이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였다가, 2008년 12월 이집트 오라스콤텔레콤 사의 투자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또한 전화망 분포와 같은 체계로 전 지역에 컴퓨터 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주요 기관 간에는 ‘광명망’(인트라넷)을 통해 전자우편을 교환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42

최근 북한 주민들의 의식·생활 변화 양상은?

■ 199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의식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변화의 주요 계기는 경제난과 2002년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7.1 조치)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된 경제난은 북한 주민들의 궁핍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50여 년간 북한 주민들이 삶을 영위해 왔던 사회주의적 생산과 분배의 방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북한 주민들의 생명선이었던 국가배급체계가 붕괴되었고, 전력난, 자재난으로 대부분의 공장과 기업소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주민들은 국가적 차원의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고 생산도 파행화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생존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했다.

주민들은 장사를 하거나 수공업품을 생산하거나 개인적 연줄을 동원하여 생활수단을 확보했다. 공공재산의 절도나 유용과 같은 위법행위도

생계 유지의 방편이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부분적으로 배급이 재개되었지만 주민들은 주로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을 배급소나 국영상점이 아닌 시장에서 구하게 되었다.

7.1 조치는 시장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소비생활의 변화, 계층 분화 등 사회적 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북한은 7.1 조치를 통해 가격과 임금의 대폭 인상, 정부보조금의 축소와 재정의 건전화 도모, 수입에 의한 기업경영관리 평가방법의 도입, 성과에 따른 분배방식 등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경제관리 방식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공급부족 현상의 심화,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하는 등 후속적인 시장 확대 조치를 취하였다.

7.1 조치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시키지는 못하였다. 7.1 조치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은 평균 20배 가까이 인상되었으나, 임금 인상을 초과하는 물가 상승으로 주민들의 실질구매력은 향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장의 활성화는 여러 가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북한 주민들은 경제난 이전에 국가의 배급에 의존했던 생활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장에 대한 적응과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시장이 주민들의 생계 유지에서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소비생활이 다양화되었으며, 그 결과 경제적 계층의 분화가 나타났다. 정치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권력층이 여전히 상위 계층을 형성하고 있

지만, 시장 적응 능력이 탁월한 일부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상층이동을 하고 있다. 인텔리 계층의 하향이동과 함께 대다수 가구들이 여전히 경제적 하층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로 하층의 궁핍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시장 적응에 성공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중간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시장의 확대는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시장에서의 활동을 비롯하여 여성들의 사경제활동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고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는 가부장적 질서를 와해할 정도는 아니지만, 가정 내 성별 분업의 완화,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강조, 이혼의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난과 7.1 조치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국가 배급제의 약화는 국가에 대한 주민들의 '조직화된 의존관계'를 약화시켰다. 식량 구입을 위한 주민 이동의 급증과 이에 따른 주민 상호 간 정보 유통의 증대, 배급제의 사실상 붕괴, 무상교육제와 무상의료제의 유명 무실화는 사회 통제의 약화와 공식적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이탈을 초래했다.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북한이 추구하는 공식적인 가치관인 집단주의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개인주의적,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뇌물수수, 물자유용 등의 부정부패 행위, 절도, 암거래 등의 생계형 범죄, '황색바람'이라 불리는 비사회주의적 문화의 확산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시장의 확대는 주민들이 기존의 집단주의적 의식과 규범에서 벗어나 '실리주의적'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3

북한의
가족제도 및
관혼상제
풍습은?

■ 1990년 제정된 북한의 가족법에 따르면 “가정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제3조)이며, “가정을 공고히 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담보”(제15조)이다. 또한 북한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가정은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는 사회의 한 세포이며 온 사회를 혁명화하는 데서 선차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사회발전을 위한 가정의 역할, 특히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가정의 혁명화를 중시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 창립 이전인 1946년에 봉건유교사상의 잔재라 하여 호적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부계 혈통 계승의 호적제도가 사라졌음에도 가족법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제26조)라고 규정하여 부성(父姓) 추종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자녀와 친척들과의 관계도 남편 쪽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가족법에는 “가정생활에서 남

편과 안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18조)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 북한의 가정생활은 남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가정에서 남편은 세대주라고 불리며 자녀 문제를 비롯한 가정의 모든 일에 있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결정권을 행사한다. 이처럼 북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전통 가족제도의 유교적 측면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가족법에 따라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지며 남자는 18세, 여자는 17세부터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 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제9조)라고 하여 간접적으로 결혼 연령을 제약하고 있다. 실제에 있어 남자는 20대 후반 내지 30대 초반, 여자는 25세 이전에 결혼하나 식량난 이후로는 20대 후반에 결혼하는 여성들이 많아졌다고도 한다. 또한 가족법에는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 사이에는 결혼할 수 없으며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에는 우리와 같은 예식장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신랑 집이나 신부 집, 또는 회관에서 결혼식을 하며 평양에서는 대형음식점에서 하기도 한다. 주례는 당 간부나 직장 상사가 하며 형편에 따라 축의금도 낸다. 신혼여행은 없으며 인근 혁명사적지나 공원 등을 찾아 기념사진이나 비디오를 찍기도 한다.

장례의 경우, 상을 당하면 먼저 상주의 직장에 통보하고 인민반을 통

해 이웃에도 알린다. 이어 인근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동(리)사무소에 신고한다. 그러면 동(리)사무소에서 장례보조금과 약간의 식량, 술 등이 나온다. 이어 시·군 상업관리소에 찾아가 사망진단서를 제시하면 이곳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장의비품과 일정량의 식량, 식료품 등을 국정 가격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식량난이 본격화된 이후부터는 국가 배급은 대부분 끊긴 상태이며, 따라서 본인들이 직접 장마당 등지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주는 굴건제복을 하지 않고 평상복에 상장이나 검은 천을 두르며 여자는 머리에 흰 리본을 단다. 빈소가 마련되면 문상객도 받는다. 장례는 3일장이었지만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1~2일장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시신 운구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상여를 썼지만 요즘은 소달구지나 트럭 등을 이용하며, 곡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북한 주민들도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한다. 북한에서도 묘지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화장을 권장하고 있으나 보편적이지 않다.

북한 주민들은 고인의 기일에 지내는 제사보다는 설이나 추석명절에 조상을 기리며 지내는 차례를 중시하는 편이다. 북한은 제사 자체를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편이나 명절에 지내는 차례는 허용하고 있다. 제사, 또는 차례는 집에서보다 산소에 가서 지내며 축문을 읽거나 지방을 쓰지 않는다. 음식은 형편에 따라 정성껏 준비하며 상차림은 정해져 있지 않다.

44

북한 주민들의 주거생활은 어떠한가?

■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예산으로 건립되는 집단적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은 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며, 개인 소유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에 제정된 민법 제59조에서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 제63조에서는 “국가는 개인 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였고, 1998년 개정헌법 22조에서는 건물을 사회주의 집단적 소유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주택의 소유와 상속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개인 간 주택거래를 허용하는 법규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의 주택은 아파트, 2~3세대용의 연립주택, 독립가옥 등의 형태로 되어 있다. 북한의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국가로부터 배정받아 매달 전기세, 물세, 관리비 등의 사용료를 내고 임대 형식으로 거주한다. 주택은 입주자의 직업, 직위 등의 사회적 신분을 기준으로 1호에

서 특호까지 모두 5개 유형으로 차등 배정된다.

1호로 분류되는 말단 노동자와 사무원, 협동농장원은 방 1~2개와 부엌이 딸린 집단공영주택 혹은 방 2개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농촌문화주택을 배정받는다. 2호인 학교 교원이나 일반 노동자는 방 1~2개에 마루방과 부엌이 딸린 일반 아파트를 배정받으며, 3호인 기업소 부장·중앙기관 지도원·도 단위 부부장은 방 2개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중급 단독주택을 배정받는다. 4호인 중앙당 과장급, 내각 국장급, 대학교수, 기업소 지배인 등은 방 2개 이상에 목욕탕, 수세식 변소, 냉난방, 베란다 시설이 있는 아파트를 배정받는다. 특호로 분류되는 중앙당 부부장 이상, 내각 부상 이상, 인민군 소장급 이상은 독립식 다층 주택으로 정원, 수세식 변기,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 고급 주택을 배정받는다.

일반 주민들의 경우 주택 부족은 아주 심각한 형편이다. 주택을 신청하면 특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증명서인 입사증을 받게 되는데, 주택을 신청하고 입사증을 받기까지 4~5년이 걸리며 최근에는 10년을 기다려도 주택을 배정받기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신혼부부도 입사증이 나올 때까지 부모와 같이 살거나 아파트 한 채에 두 세대가 동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 기업소에서 기업의 노동자에게 필요한 주택을 지어 주도록 하는 ‘과제주택’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고, 제3차 7개년 계획 기간(1987~1993) 동안에 주택 30만호 건설 방침을 세우기도 하였지만, 실제 공급량은 계획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전국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살림집 건설과 주택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원 부족 및 건설자재 공급난으로 목표에 크게 미달하였고 평양시 주택건설 및 시가지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평양과 지방 간 주거 생활 격차가 크다.

주택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을 비롯한 세간은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척도이다. 북한 주민들은 “사람이 살려면 오장육부가 있어야 하듯이 가정에도 오장육기가 있어야 한다” 고 말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찬장, 이불장, 양복장, 책장, 신발장의 ‘오장’과 냉동기, 세탁기, 텔레비전, 선풍기, 사진기, 재봉기의 ‘육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외제 가전제품을 갖추고 살기도 한다.

● 북한의 농촌주택 ●



45

북한의 명절은
어떤 것이
있는가?

■ 북한에서는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 전통 민속명절 등을 총칭하여 명절이라고 한다. 북한의 명절은 소위 10대 국가명절과 5대 민속명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0대 국가명절은 김정일 생일(2.16), 국제 부녀절(3.8), 김일성 생일(태양절, 4.15), 인민군 창건일(4.25), 국제 노동자절(5.1),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7.27), 해방기념일(8.15), 정권 창건일(9.9), 노동당 창건일(10.10), 헌법절(12.27) 등 북한 정권 및 사회주의 발전에 의의가 있는 날로 정해져 있다. 5대 민속명절은 양력설(1.1), 음력설(음력 1.1), 정월대보름(음력 1.15), 단오(음력 5.5), 추석(음력 8.15)등이다.

북한은 1960년대 말까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우리의 전래 민속명절을 인정하지 않다가 1972년 남북대화 이후 추석 성묘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추석이 명절로 지정된 것은 1988년이며 음력설, 한식, 단오 등은 1989년부터 명절로 지정되었다. 2003년부터

터는 양력설 대신 음력설을 지내기 시작하였으며 정월대보름도 하루 휴무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때부터 단오와 추석은 예전의 이름대로 수리날과 한가위로 부르고 있다.

명절을 말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설과 추석을 떠올린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며 기쁜 마음으로 지내는 설날과 한 해 농사를 돌보아주시는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추석은 우리 민족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전래의 고유 민속명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 전래의 명절이 남한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북한에서도 민속명절이 휴무일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명절 전후의 일요일에 보충근무를 하고 명절 당일에 쉬는 ‘대휴’이며,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민속명절을 하루 쉴 수 있는 날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식량난, 경제난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부터는 민속명절을 생각조차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도 추석 명절에 성묘를 한다. 경제난으로 생계 유지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가능한 정성껏 준비하여 조상의 묘를 찾는다고 한다.

북한 최대의 명절은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이다. 1994년에 고인이 된 김일성의 생일은 1998년 이래 이른바 ‘태양절’이라고 이름 지어 크게 경축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의 생일이 들어 있는 2월부터 김일성의 생일이 들어 있는 4월까지를 ‘민족 최대의 명절’ 축제기간으로 설정하고 예술 공연, 체육행사, 토론회 및 전시회 등 각종의 축하행사를 벌인다. 또한 이때에 즈음하여 북한의 신문·방송들은 해외 여러 나라

들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인민’들이 축하편지와 꽃바구니를 보내오며 예술단을 보내 축하공연을 한다고 연일 보도한다. 사실상 북한 주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도 김일성·김정일 생일이라고 한다. 이 때에는 주민들에게 이들의 연휴와 함께 고기, 당과류, 술, 담배 등 특별공급을 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6

북한 주민들의 여가 생활은 어떠한가?

■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에게는 여가 시간이 부족하며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만한 정신적 · 경제적 여유도 많지 않다. 사회생활의 기본 원리인 집단주의에 기초해, 북한 주민들은 일정한 규율의 조직생활로 거의 한평생을 보내야 하며, 직장에서 하루 일과를 끝낸 후에도 집안 일뿐만 아니라 각종 노력동원과 사상교양에 참여해야 하므로 바쁘게 시간을 보낸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지난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으로 개인장사 등 부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가느라 더욱 바빠졌다. 따라서 어렵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운동이나 여행을 즐기기보다는 식량과 떨감을 구하러 다니는 일에 여가를 활용하는 편이다. 특히 국내외 여행이나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 · 친지와 의 만남 등과 같은 여가활동은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행정절차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다. 기차 외에는 지역 간 이동을 위해 이용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거의 없는 것도 여행과 같은 여가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도 나름대로의 여가생활을 즐긴다. 가장 보편적인 여가활동은 영화 관람이다. 북한에는 문화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여가를 즐길 만한 다양한 놀이문화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영화관 외에 생산현장 내의 영화시설이나 시·군 문화회관 등에서도 영화를 쉽게 접하고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가장 즐긴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여가활동은 텔레비전 시청이다. 전 기사정이 어려워 시간적인 제약을 받기는 하나 북한 주민들은 가구별로 또는 여러 세대가 한 곳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며 여가를 즐긴다. 북한 주민들은 축구나 탁구, 배구, 농구 등의 운동을 하며 여가를 보내기도 한다. 주패, 윗놀이, 장기, 강변 낚시, 수영 등도 보편적인 여가 활동이다.

북한 주민의 여가생활은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와 다른 지방들 간에 차이가 있다. 특히 평양에는 대성산 유원지의 현대식 놀이시설, 창광원의 잘 꾸며진 수영장, 청춘거리(안골체육촌)의 수준급 체육시설, 전자오락실, 화면반주음악실(노래방), 당구장, 여러 가지 메뉴의 고급식당 등이 있어 평양 시민들은 가족단위의 나들이를 하며 비교적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 북한의 영화관 ●



북한의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등은 해마다 14일 간의 정기휴가를 받는다. 연간휴가는 근로자들에게 생활비(월급) 전액을 지불하면서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휴식을 취하게 하는 유급 휴가제도이다. 직장에서 연례적인 정기 휴가를 받으면 북한 주민들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가까운 해수욕장에 다녀오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는 하루 일정이기 때문에 휴가 여행이라기보다는 피서를 겸한 수련회의 성격이 짙다.

47

북한의
교육 실태는?

■ 1999년에 제정된 북한의 교육법 제3조에서는 북한 교육의 목적을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교육, 체육 및 예능 교육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학교교육 체계는 일반교육체계와 특수교육체계로 구성된다. 기본학제는 2년제 유치원, 4년제 소학교, 6년제 중학교, 4~7년제 대학교로 구성되며, 만 5세 이상의 모든 학생들에게 취학 전, 소학교, 중학교 과정까지 11년 간의 무상의무교육이 제공된다. 초·중등교육기관은 인문계열과 실업계열의 구분이 없다.

고등교육기관으로는 4~7년제 대학, 중·고등교원을 양성하는 4년제 사범대학, 유치원교원과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3년제 교원대학, 기술인

력을 양성하는 3년제 전문학교가 있고, 대학 졸업 후 2~3년제 연구원과 박사원에 진학할 수 있다.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종합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과대학이다. 종합대학을 포함한 10여 개의 중앙급 대학에서 각 산업부문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며, 지방 단과대학에서는 각 지역의 산업수요를 반영한 실무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북한의 특수교육기관으로는 영재교육기관과 혁명유자녀 등 특수층 자녀 교육기관이 있다. 영재교육은 주로 예체능, 과학기술, 외국어 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체능 분야에서는 영재의 조기 선발을 중시하기 때문에 소학교나 중학교 단계의 조기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예체능분야의 영재교육기관은 1960년대에 설립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금성학원, 평양음악학원, 남포중앙체육학원, 김정일예술학원 등이 있다.

중등교육 수준의 과학기술 영재교육기관은 전국 시·군·구역별로 1개교씩 설치되어 있는 제1중학교이다. 이 학교들은 일반 중학교보다 우수한 교육 시설과 교사진을 갖추고 있고, 교육과정은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 중학교보다 높은 수준의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한다. 이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각종 행사와 노력동원 면제 혜택과 종합대학을 비롯한 대학에 ‘직통생’으로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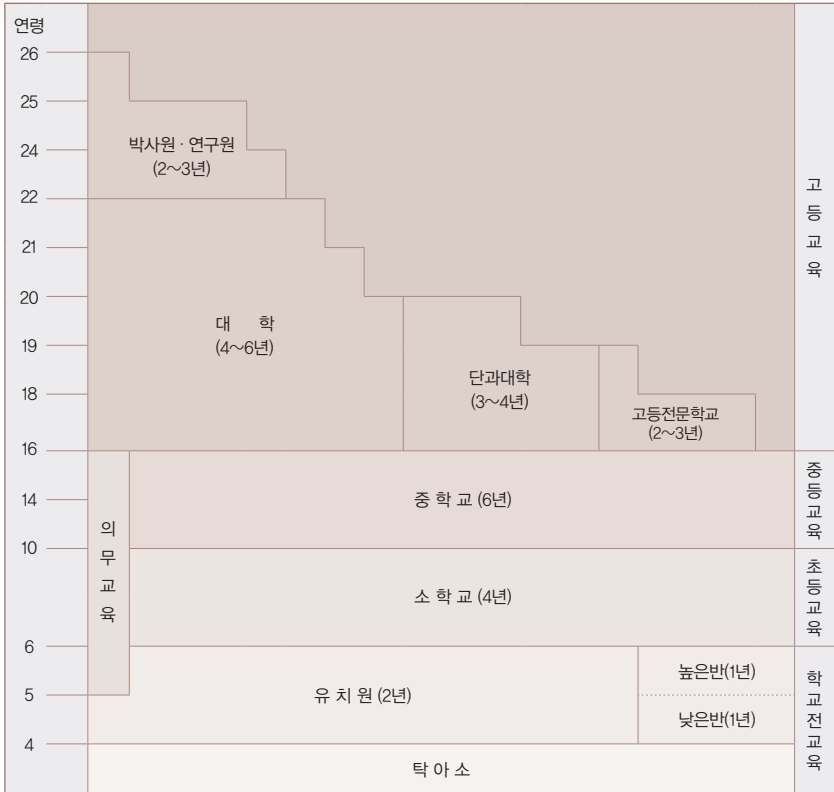
2000년대에 들어서 컴퓨터와 정보통신 분야의 교육은 더욱 강조되어, 2001년에는 금성제1중학교, 금성제2중학교에 컴퓨터수재반을 설치하

고, 제1중학교를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중학생 중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배치하였다. 이는 제1중학교에서 실시하던 과학기술 분야 교육에서 컴퓨터 부문을 따로 특화시킨 것으로, 컴퓨터 설비와 교재, 교수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외국어교육은 대외교류의 필요성 등으로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다. 현재 일반 중학교에서는 주당 3~4시간씩 영어나 러시아어를 가르치는데, 일반적으로는 영어를 가르친다. 그러나 일반 학교에서는 질 높은 외국어교육이 실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외국어 분야의 영재교육기관으로는 평양외국어학원과 각 시도별 있는 외국어학원이 있다. 평양외국어학원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 8개 외국어를 교육하며, 졸업생들은 평양외국어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북한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공교육제도를 확립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의 영향으로 교육 인프라가 상당히 훼손되었고, 학생과 교사가 정상적으로 등교,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장기화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 수업도 파행적으로 운영되었고, 이는 교육의 질 하락과 공교육제도의 실질적 붕괴로 이어졌다.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학용품 부족도 심각하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이 다소 완화되면서 북한 당국은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북한의 교육체계 ●



48

북한 주민들의 남한 및 자본주의 문화 수용 실태는?

■ 1980년대 말 이후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남한 대중가요와 디스코 음악이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불법 복제된 남한 드라마와 영화 CD,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이 드물지 않게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불법 CD 단속을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기 위한 소탕전”이라 하여 중앙당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도,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남한 드라마와 영화를 담은 CD, 비디오 테이프 등이 주민들 사이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중국을 오가는 장사꾼들에게서 각종 CD를 구입하여 몰래 보며 어른들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도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여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을 모방하고 흉내를 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대서방관계 개선과 부분적인 개방을

모색해 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과 1995년 ‘평화를 위한 국제 체육 및 문화축전’ 등의 행사 유치를 통해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에서 침투한 서구 사조와 문물의 영향,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및 세계적인 자유화 추세 등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 사상적 동요가 일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점차 확산시킨 것은 199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다.

1995년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대북식량 지원과 관련한 남한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방북이 잦아졌으며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서구 사조·문물과의 접촉 기회가 더 많아졌다. 한편 경제난 이래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는 특히 중국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친척의 도움을 받기 위해, 또는 밀거래를 하기 위해 중국을 오간 북한 주민들은 입소문을 통해서나, 남한 텔레비전 방송 시청, 잡지 구독 등을 통해서 남한과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한에 거주했던 조선족들을 통해서도 방송이나 잡지들에서 본 남한 문화, 자본주의 문화가 ‘선전’을 위해 만들어진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도 한다. 또한 남북한 간의 왕래와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남한과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서구 사조·문물의 유입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국경 지역으로부터 불어온 이른바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북한 청소년들

의 사상적 이완과 가치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청소년들 사이에 ‘자유주의’ 경향과 사상적 해이 및 혁명성 약화, 집단적 조직 생활을 벗어난 행위 등이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우려하여 통제와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속에 밖으로부터 반동적이고 퇴폐적인 부르주아 도덕과 생활풍조가 침습하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든든히 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외부 사조 및 문물의 침투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우려한 북한 당국이 1990년대 말 내놓은 이른바 ‘모기장론’이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도 ‘모기장 전략’이 등장한 바 있다. 구소련 해체 및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때를 같이 하여 등장한 ‘모기장 전략’은 자본주의 풍조가 침투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 사회주의를 고수하고자 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비해 1990년대 말에 나온 ‘모기장론’은 부분적으로 대외 개방을 실시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사조·문물과 접촉하면서 겪을 수 있는 문화적 충격을 완화하고 혁명성·이념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책으로 볼 수 있다.

49

북한의
종교 실태는?

■ 북한 헌법 제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1년 7월 북한이 제출한 제2차 국가인권보고서에 대한 UN인권이사회의 심의에서 북한 대표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의 종교 인구는 기독교도 1만 명, 천주교도 3천 명, 불교도 1만 명, 천도교도 1만 5천 명으로 총 4만 명 정도이며, 봉수교회, 칠골교회, 제일교회 등 3개의 교회와 500개의 가정예배처소, 장충성당, 60여 개의 사찰, 52개의 천도교당이 있다고 한다. 2006년 8월에는 평양에 러시아정교회의 성소인 정백사원이 건립되었다. 또한 천주교 사제만 없을 뿐 교직자 수도 기독교 300명, 불교 200명, 천도교 250명에 이르며 이들에 의해 종교의식이 거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1999년 조선기독교도연맹을 개칭),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카톨릭교협회(1999년 조선천주교인협회를 개칭) 등 각 종교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신앙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 종교단체 운영의 자율성 및 성소 활동의 독자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북한에 진정한 의미의 종교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헌법 제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 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신앙의 자유란 종교시설 건립과 당의 통제 하에 있는 성직자들에 의한 종교의식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종교를 억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각 종교 고유의 교리에 따른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포교 등의 활동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북한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라기보다는 관제 또는 어용 종교가 있을 뿐이다. 또한 북한의 각 종교단체는 당의 외곽단체로서 종교단체 본연의 기능보다는 대외적 활용 가치가 높은 정치적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당국의 종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종교적 심성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이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종교적 의식이나 관습이 남아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전언, 해방 전 북한 지역의 종교 인구와 교세가 상당했다는 사실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완전한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종교성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육성되고 변하거나 소멸하는 것이라고 할 때, 북한

주민의 종교성은 이질화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 비록 관제·어용의 성격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각 종교의 공개적 종교 의식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종교에 대한 의식이 변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극심한 식량난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종교와 신앙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 평양 봉수교회 신축예배당 ●



50

북한의
정보화 수준은?

■ 북한은 인민경제 각 부문의 현대화와 정보화 없이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2차에 걸쳐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1차 1998~2002, 2차 2003~2007)을 수립·추진하는 등 과학기술 및 정보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최근 과학기술산업의 육성을 적극 강조하는 가운데 핵심 전략 산업으로서 정보기술산업 발전에 주력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은 정보기술산업이 단기간 내에 북한 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단번 도약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보기술산업은 대규모 자본을 도입하지 않아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첨단산업으로 규정되는 정보기술산업이 21세기 김정일 시대의 비전으로 제시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목표에 부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 인터넷을 도입했으나,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연구·개발과 같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해 놓은 상황이며, 대외적으로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지의 연구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북한 내 주요 기관과 연구기관을 내부 전산망으로 연결해 놓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무역정보 등 보다 폭넓은 정보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외부와의 인터넷 접속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인트라넷은 2002년 11월부터 지역별로 운영해 오던 컴퓨터 네트워크를 전국적인 연결망으로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트라넷에 가입된 회원 수는 약 200만 명으로, 최근 컴퓨터 보급이 확대되면서 북한 내 인트라넷 홈페이지의 수도 증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구축한 인트라넷 ‘광명망’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과학기술자료를 기업소와 개인이 열람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포털 사이트 ‘광명’에는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 방송·신문 발행기관 사이트 등도 링크되어 있으며, 잡지 등 전자출판물도 상당수 등록되어 있다. 또한, 간단한 게임 및 교육 정보 등도 이용할 수 있다. 광명망에 가입하려면 집에 광케이블 전화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남한이 전화선에 모뎀을 연결해 쓰던 시절 정도의 기술 수준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광명망 가입비가 비싸 일반 주민들이 쉽게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광명과 광명망이 기술적으로는 여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남한처럼 개인용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한처럼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유로운 검색이나, 블로그·게시판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메일의 경우 광명망 가입자 중에서 원하는 사람에게 당국에서 일률적으로 메일 계정을 할당해 준다. 그러나 개인용으로 이메일을 쓰는 경우는 드물다.

북한의 컴퓨터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1960년대 말에 제1세대 디지털 컴퓨터인 ‘전진-5500’을 제작했으며, 1970년대 말에는 제2세대 컴퓨터인 ‘용남산 1호’를 개발하였다. 이후 북한은 1982년 8비트 개인용 컴퓨터 시제품인 ‘봉화4-1’과 16비트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하였다. 1990년대 이후 32비트급의 조립생산에 주력해 왔으나, 2003년부터는 중국 및 대만산 부품에 의존한 개인용 컴퓨터를 조립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생산의 증대 노력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 수입에 힘입어 최근 북한의 개인용 컴퓨터 보급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 북한에서는 개인용 컴퓨터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개인이 소장하기보다는 관공서나 기업소 등 단체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평양 등 대도시에는 컴퓨터가 대체로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 농촌지역에는 거의 보급되어 있지 않은 등 도농 간 격차도 보이고 있다.



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

부록

- 1 남북 인적·물적 왕래 현황
- 2 남북 교역 현황
- 3 개성공단 사업 추진 현황
- 4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 5 이산가족 교류 현황
- 6 북한이탈주민 관련 현황
- 7 북한 인구 현황
- 8 북한 수교국 및 국제기구 가입 현황

1 남북 왕래 인원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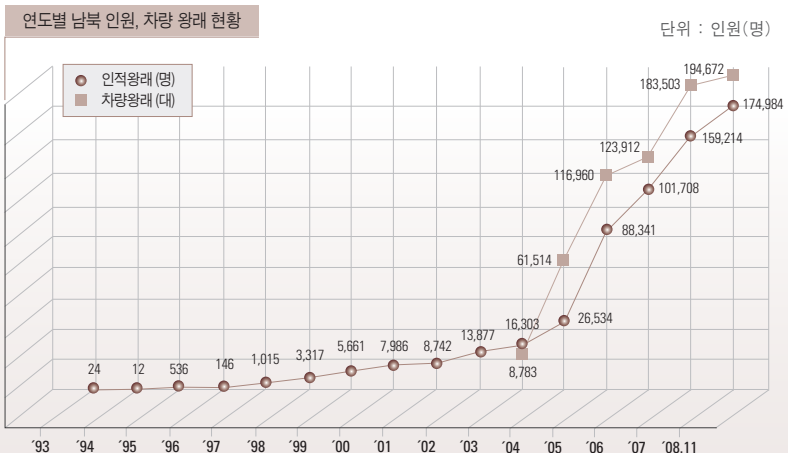
구분	'89-'99	'00	'01	'02	'03	'04	'05	'06	'07	'08.11	계
남→북	11,321	7,280	8,551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174,657	602,163
북→남	637	706	191	1,052	1,023	321	1,313	870	1,044	327	7,484
합계	11,958	7,986	8,742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174,984	609,647

*금강산 등 관광인원 제외

2 남북 차량 왕래 현황

단위 : 회

구분		'03	'04	'05	'06	'07	'08.11	계
차량 (운행횟수)	경의선	2,497	30,442	77,395	94,506	143,450	170,167	518,457
	동해선	6,286	31,072	39,565	29,406	40,053	24,505	170,887
	합계	8,783	61,514	116,960	123,912	183,503	194,672	689,344
차량 (물동량)	경의선			563,321	570,044	757,235	380,738	2,271,338
	동해선			95,675	41,975	134,301	35,856	307,807
	합계	0	0	658,996	612,019	891,536	416,594	2,579,145



3 금강산 및 개성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11	계
금강산 관광	해로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38,306	449	-	-	-	552,998
	육로	-	-	-	-	-	36,028	267,971	298,247	234,446	345,006	1,381,664
	계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234,446	345,006	1,934,662
개성 관광	-	-	-	-	-	-	-	1,484	-	7,427	103,122	112,033

4 남북 선박 왕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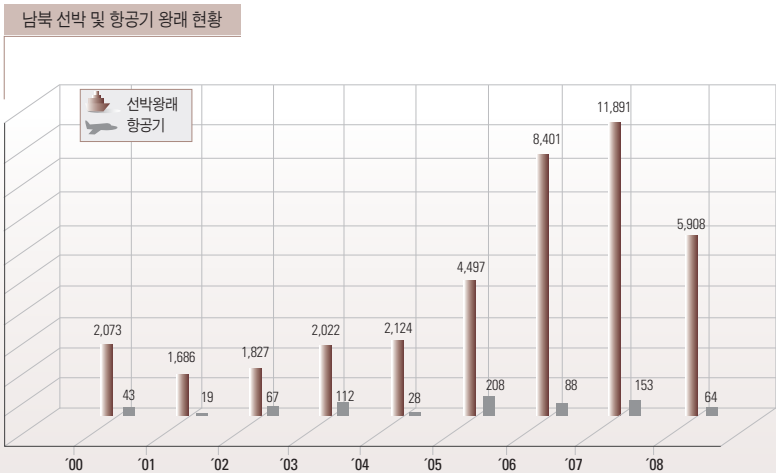
단위 : 회/만톤

구분	'94~'99	'00	'01	'02	'03	'04	'05	'06	'07	'08.9	계
운항횟수	3,399	2,073	1,686	1,827	2,022	2,124	4,497	8,401	11,891	5,908	43,828
물동량	326	70	64	109	105	111	680	1,631	2,511	1,203	6,810

5 남북 항공기 왕래 현황

단위 : 회/명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11	계
운항횟수	43	19	67	112	28	208	88	153	64	782
수송인원	1,873	1,365	4,814	7,512	1,576	22,722	3,170	7,515	4,217	54,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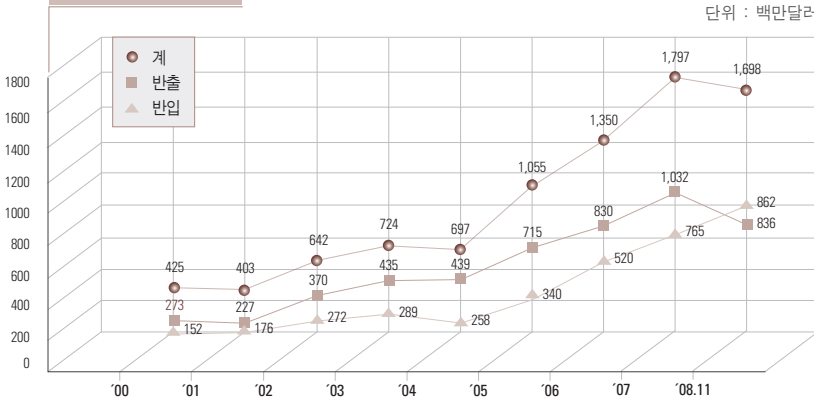
1 연도별 남북교역액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89~'99	'00	'01	'02	'03	'04	'05	'06	'07	'08.11	계
반입	1,466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862	5,100
반출	636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2	836	5,793
계	2,102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1,698	10,893

연도별 남북 교역액 현황

단위 : 백만달러



2 연도별 남북교역 건수 및 품목수 현황

단위 : 건/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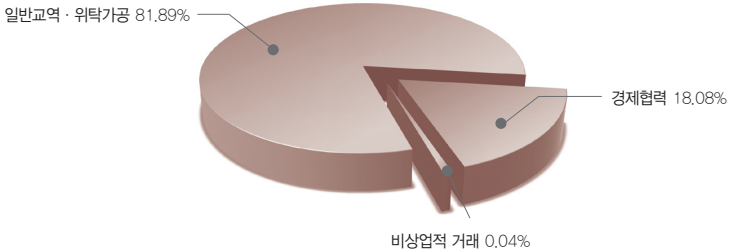
구분	'89~'99	'00	'01	'02	'03	'04	'05	'06	'07	'08.11	계
교역 건수	반입	11,573	3,952	4,720	5,023	6,356	5,940	9,337	16,412	25,027	28,440
	반출	12,460	3,442	3,034	3,773	4,853	6,953	11,878	17,039	26,731	32,888
	계	24,033	7,394	7,754	8,796	11,209	12,893	21,215	33,451	51,758	61,328
품목수	반입	998	204	201	204	186	202	381	421	450	459
	반출	1,571	527	492	495	530	575	712	697	803	802
	전체	2,265	578	549	572	588	634	775	757	852	849

3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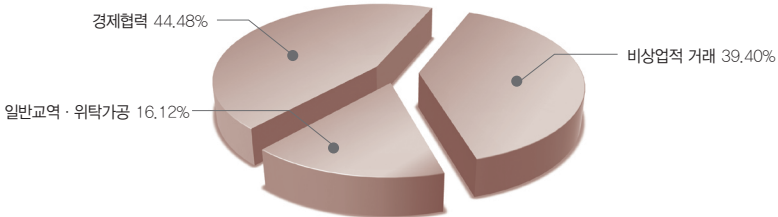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구분	남북교역 유형	2004	2005	2006	2007	2008.1~11
반입	일반교역·위탁가공	258	320	441	645	583
	경제협력 (개성공단·금강산관광·기타·경공업협력)	0	20	77	120	279
	비상업적 거래 (정부·민간 지원 / 사회문화협력 / 경수로사업)	0	0	1	0	0
	반입 합계	258	340	520	765	862
반출	일반교역·위탁가공	89	100	116	145	171
	경제협력 (개성공단·금강산관광·기타·경공업협력)	89	250	294	520	561
	비상업적 거래 (정부·민간 지원 / 사회문화협력 / 경수로사업)	261	366	421	367	103
	반출 합계	439	715	830	1,032	835
남북 간 실질교역 수지(경제협력, 비상업적 거래 제외)		△168	△221	△326	△500	△412

반입



반출



1 개성공단 가동기업 수 및 생산액·수출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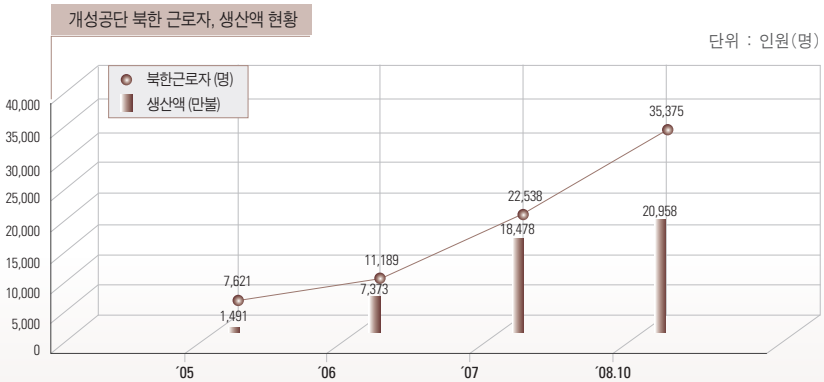
단위 : 개/백만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계
가동기업 수	11	30	65	87	87
생산액	1,491	7,373	18,478	20,958	48,300
수출액	86.6	1,983	3,967	3,178	9,214

2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10
북한 근로자	7,621	11,189	22,538	35,375
남한 근로자	490	791	785	1,461
합 계	8,111	11,981	23,323	36,836



3 개성공단 출입 현황

단위 : 명/대

구분	2005	2006	2007	2008.10	계
인원	40,874	59,553	91,722	122,787	314,936
차량	19,413	29,807	42,399	70,665	162,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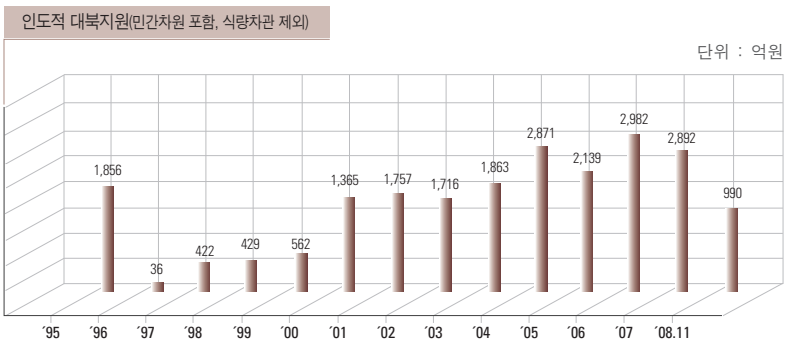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1 대북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11	합계	
정부 차원	무상지원	1,854	24	240	154	339	978	975	1,140	1,097	1,313	1,360	2,273	1,983	357	14,087
	식량차관	-	-	-	-	-	1,057	-	1,510	1,510	1,359	1,787	-	1,505	-	8,728
	계	1,854	24	240	154	339	2,035	975	2,650	2,607	2,672	3,147	2,273	3,488	357	22,815
민간차원(무상)	2	12	182	275	223	387	782	576	766	1,558	779	709	909	633	7,793	
총액	1,856	36	422	429	562	2,422	1,757	3,226	3,373	4,230	3,926	2,982	4,397	990	30,608	

*민간에 대한 기금지원액(976억원)은 정부차원 지원액에 포함



2 분야별 무상지원 현황

단위 : 만불

구분	'95-'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11	누계
일반 구호	23,680	4,329	2,891	565	1,435	6,067	4,174	6,157	10,472	4,346	11,446	12,858	3,680	92,100
	100%	92%	91%	12%	13%	45%	31%	39%	42%	20%	39%	42%	40%	45%
농업 복구	5	205	254	3,941	8,562	5,476	7,351	7,673	8,695	13,744	14,081	11,900	737	82,624
	0%	4%	8%	84%	75%	40%	54%	49%	35%	65%	47%	39%	8%	40%
보건 의료	189	40	182	1,380	1,996	1,967	1,933	5,624	3,164	4,301	5,703	4,805	31,284	
		4%	1%	4%	12%	15%	15%	12%	23%	15%	14%	19%	52%	15%
계	23,685	4,723	3,185	4,688	11,377	13,539	13,492	15,763	24,791	21,254	29,828	30,461	9,222	206,00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산가족 교류 현황

1 이산가족 교류 현황

단위 : 건/명

구분	연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11	계
민간차원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388	209	276	69	74	44		3,785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961	776	843	449	413	209		11,302
	제3국 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165	203	290	187	94	50	53	31		1,670
	방북상봉										1	5	4	5	5	3	1	1	4	1	3	
										(2)	(18)	(9)	(22)	(24)	(15)	(5)	(5)	(19)	(5)	(5)		(129)
당국차원	생사확인	65											792	744	261	963	681	962	1,069	1,196		6,733
		(157)											(7,543)	(2,670)	(1,635)	(7,091)	(5,007)	(6,957)	(8,314)	(9,121)		(48,495)
	서신교환												39	623	9	8						679
													(39)	(623)	(9)	(8)						(679)
	방남상봉	30											201	100								331
	(81)											(1,720)	(899)									(2,700)
방북상봉	35											202	100	398	598	400	397	594	388			3,112
	(76)											(674)	(343)	(1,724)	(2,691)	(1,926)	(1,811)	(2,683)	(1,741)			(13,669)
화상상봉																	199	80	278			557
																	(1,323)	(553)	(1,872)			(3,748)

2 이산가족 등록 현황

-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90세 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 이하	계
인원	3,172	26,297	36,308	14,648	8,649	89,074
신청비율	3.6	29.5	40.8	16.4	9.7	100

- 가족관계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부부/부모/자식	형제/자매/동생	3촌 이상	계
인원	42,326	35,005	11,743	89,074
신청비율	47.5	39.3	13.2	100

- 성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계
인원	58,226	30,848	89,074
신청비율	65.4	34.6	100

*'88~'08.11 127,323명 등록, 사망 38,249명, 생존 89,074명

북한이탈주민 관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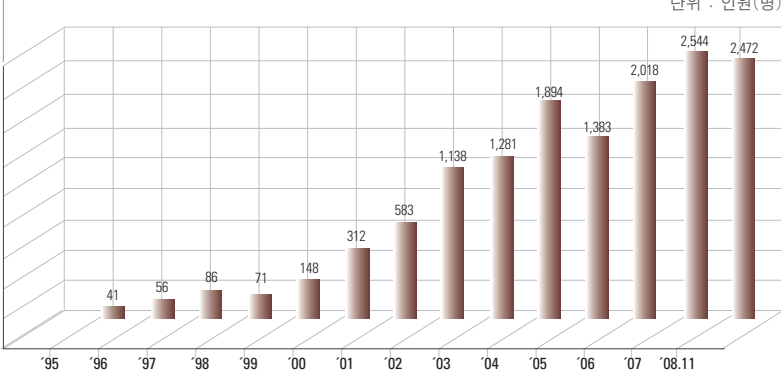
1 입국 현황

단위 : 명

구분	'~89	'90~'94	'95~'98	'99~'01	'02	'03	'04	'05	'06	'07	'08.11	계
남	562	80	187	563	506	469	626	423	509	570	517	5,019
여	45	6	67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1,955	9,701
합계	607	86	254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472	14,720
비고 (여성비율)	7%	7%	26%	46%	55%	63%	67%	69%	75%	78%	79%	65%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단위 : 인원(명)



2 연령별 입국 현황

2008.9 현재, 단위 : 명/%

구분	10세 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인원	535	1,755	4,030	4,781	2,033	615	682	14,431
비율	4	12	28	33	14	4	5	100

3 지역별 거주 현황

2008.9 현재, 단위 : 명/%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충남	대구	경북	충북
인원	4,704 (32%)	3,345 (23%)	1,300 (9%)	650	452	445	403	394	393
지역	대전	광주	강원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인원	386	320	306	300	200	166	89	13,853명	

*사망·이민자와 주소 미등록자, 보호시설 수용자 제외

4 재북 직업별 유형

2008.9 현재, 단위 : 명/%

구분	무직/부양	노동자	관리직	전문직	예술/체육	봉사	군인/공직원	계
인원	6,612	5,922	346	326	145	556	524	14,431
비율	46	41	2	2	1	4	4	100

단위 : 천명

구 분	총인구	남	여	성 비(%)
1970	14,905	7,052	7,853	89.8
1975	16,646	7,964	8,682	91.7
1980	17,622	8,478	9,143	92.7
1985	19,097	9,248	9,849	93.9
1990	20,221	9,841	10,380	94.8
1991	20,495	9,984	10,512	95.0
1992	20,798	10,140	10,657	95.1
1993	21,123	10,293	10,831	95.0
1994	21,353	10,416	10,938	95.2
1995	21,543	10,519	11,024	95.4
1996	21,684	10,600	11,085	95.6
1997	21,810	10,672	11,138	95.8
1998	21,942	10,747	11,195	96
1999	22,082	10,824	11,258	96.1
2000	22,175	10,876	11,299	96.3
2001	22,253	10,920	11,333	96.4
2002	22,369	10,983	11,386	96.5
2003	22,522	11,066	11,456	96.6
2004	22,709	11,165	11,543	96.7
2005	22,928	11,282	11,646	96.9
2006	23,079	11,364	11,715	97.0
2007	23,200	11,429	11,771	97.0

*출처 : 통계청
*성비는 여성인구 100명당 남성인구 수

북한 수교국 및 국제기구 가입 현황

1 남북한 수교 현황

2008.7 현재

지역	총국가	총수교국		동시 수교국	단독수교국		미수교국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아주	36	36	25	25	11	0	0	11
미주	35	34	24	23	11	1	1	11
구주	54	53	49	48	5	1	1	5
중동	20	19	17	16	3	1	1	3
아프리카	46	46	45	45	1	0	0	1
계	191	188	160	157	31	3	3	31

*출처 : 외교통상부

2 남북한 단독 수교국 현황

2008.7 현재

지역	남한	북한
아주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부탄, 사모아, 솔로몬제도, 일본,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피지, 팔라우 (11개국)	
미주	미국,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11개국)	쿠바(1개국)
구주	교황청, 모나코, 안도라, 에스토니아, 프랑스 (5개국)	마케도니아(1개국)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스라엘 (3개국)	시리아(1개국)
아프리카	레소토 (1개국)	
계	31개국	3개국

*출처 : 외교통상부

3 남북한 동시 수교국 현황

2008. 7 현재

지역	국 명
아 주 (25)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미 주 (23)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안티구아바부다,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구 주 (48)	그루지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중 동 (16)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바레인, 수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아프리카 (45)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계	157개국

*출처 : 외교통상부

4 남북한 재외공관 현황

2008. 7 현재

지역	총재외공관		구분	구분별 재외공관	
	남한	북한		남한	북한
아주	43	16	대사관	24	14
			총영사관	19	2
			대표부	1	0
미주	33	5	대사관	21	4
			총영사관	13	0
			대표부	1	1
구주	43	15	대사관	34	12
			총영사관	7	1
			대표부	2	2
중동	19	6	대사관	17	5
			총영사관	2	0
			대표부	0	1
아프리카	13	7	대사관	13	7
계	153	49			

*출처 : 외교통상부

5 남북한 국제기구 가입 현황

2007. 11 현재

지역	UN산하기구	UN전문기구	UN독립기구	정부간기구	계
남한	22	16	2	70	110
북한	10	12	-	30	52

*출처 : 통계청

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

인쇄일 : 2008년 12월

발행일 : 2008년 12월

발행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 전화 : 02)901-7166~7
- 팩스 : 02)901-7088

편집·인쇄 : 현프린트 (02)2273-7142

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

50 Q&A about Unification



통일부 통일교육원

www.unikorea.go.kr

별간등록번호

11-1250054-000067-01